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000062-10

2022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CONTENTS

제1편

제도 개요 / 1

I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개요	3
1.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내용	3
II . 업무처리 프로세스	6
1. 개괄	6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7
3. 시군구·읍면동, 교육청·학교의 역할	11

제2편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 / 13

I . 교육비 신청 및 교육비 납부유예	14
1. 신청	14
2. 접수	18
3. 교육비 납부유예	18
II .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20
1. 보장의 단위	20
2. 선정기준 및 교육비 지원 내용	22

제3편

조 사 / 33

I . 조사개요	34
1. 조사의 종류	34
2. 조사대상과 내용	36
3. 조사원칙	36
4. 조사 제외 대상자	36
5. 조사절차(신청조사)	37
6. 자료제출 요구	38
7. 유의사항	39
II . 소득조사	40
1. 소득의 의미	40
2. 실제소득의 범위	40
3. 소득 산정기준	40
4. 소득의 유형별 조사방법	41
III . 재산조사	49
1. 재산의 종류	49
2. 재산의 조사범위	50
3. 재산의 산정기준	50
4.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52
IV . 소득인정액 산정	63
1.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63
2. 재산의 소득환산액	63





제4편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 69

I . 보장결정 및 통지	70	IV. 보장비용의 징수	82
1. 개요	70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82
2. 조사결과 송부	70	2. 결손처분	84
3. 보장결정 및 통지	71	3. 소멸시효	85
4. 학교장 추천	73	4. 고발조치	85
5. 교육비 지원의 실시	73	5. 부정수급 신고 처리 절차	85
6. 교육비 지원의 중지(신청 취소·철회)	74	V. 개인정보 보호	87
7. 학교 변동사항 관리	75	1. 개 요	87
II. 이의신청	76	2. 주요 노출 사례	87
1. 개 요	76	3. 조치 사항	88
2. 이의신청 신청방법	76		
3. 이의신청 절차	77		
4. 이의신청 처분의 효력	79		
5. 이의신청 서식	79		
III. 변동 및 사후관리	80		
1. 개요	80		
2. 변동사항 확인대상	80		
3. 변동사항 확인방법	80		
4.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81		

붙임

참고 자료 / 89

1.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	90
2. 교육비 신청 관련 서식	107
3. 교육급여 사업과의 관계	134

2022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주요 개정 사항

□ 세부내용

분류	2021년도	2022년도			
지원대상 (p3)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집중신청기간 (p3, p14)	○ 2021. 3. 2.(화) ~ 3. 19.(금)	○ 2022. 3. 2.(수) ~ 3. 18.(금)			
소득인정액 (p4, p24)	(단위 : 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2022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고시)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소득 인정 액	중위소득 50% 이하	1,630,043	2,097,351	2,560,540
		중위소득 52% 이하	1,695,244	2,181,245	2,662,962
		중위소득 60% 이하	1,956,051	2,516,821	3,072,648
		중위소득 80% 이하	2,608,068	3,355,761	4,096,864
공통기준 (p23)	가. 공통기준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31p. 난민 인정자 지원 참조)	가. 공통기준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31p. 난민 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지원 참조)			
학교장 추천 지원 (p28~29)	〈표〉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제도 개요 ※ 교육비 지원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장 추천 비중은 축소 [*] 하되, 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하는 대상의 범위는 확대하여 전체 지원규모 유지 [*] 학교장 추천 비율(축소) : '14년 (약	〈표〉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제도 개요			

분 류	2021년도	2022년도
	<p>10~15%) → '15년 이후 (10%미만) 유지</p> <p>※ 학교장 추천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학교별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지원</p> <p>-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의 사망,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모의 이혼, 가계파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갑작스런 실직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채권 압류 및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희귀, 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그 외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p>※ 학교장 추천비율이 10% <u>초과하는</u> 경우, 학교별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지원 <u>하되, 다음과 같은 신취약계층을 추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비율을 15%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다.</u></p> <p>-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p> <p>-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p> <p>- 다자녀 가정 학생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p> <p>-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의 사망,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모의 이혼, 가계파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갑작스런 실직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채권 압류 및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희귀, 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매출·소득감소가 발생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 · 미등록아주아동, 다자녀 가정 등 기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분 류	2021년도	2022년도
지원내용 (p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u>인터넷통신비(자율)</u>
난민 인정자 지원 (p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난민 인정자 지원(교육청·학교) - 사업근거 : 「난민법」제33조 2항, 「난민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난민법 시행규칙」 제13조 - 지원 대상 :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난민 인정자 및 <u>특별기여자</u> 지원(교육청·학교) - 사업근거 : 「난민법」제33조, 「난민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난민법 시행규칙」 제13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4조의2 - 지원 대상 :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인정자, <u>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u> 또는 그 자녀



제 1 편

제도 개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요약자료

○ 사업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등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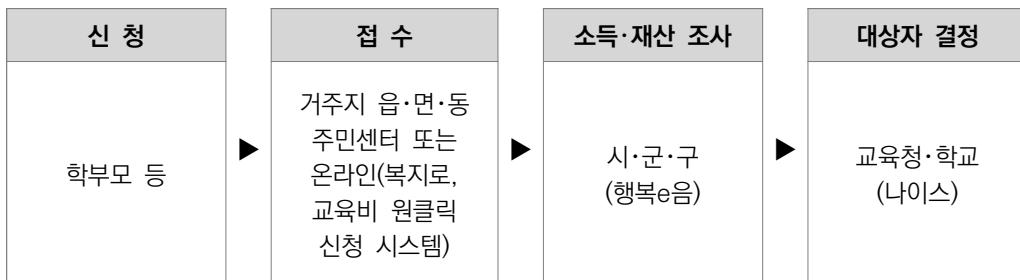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이 상이하나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이하 가구

○ 지원 내용(4대 교육비)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 지원 절차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개요

1.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내용

□ 업무 처리 개요

구 분	내 용										
지침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신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신청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학생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 온라인신청 가능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생략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2년 집중신청기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2022. 3. 2.(수) ~ 3. 18.(금)</u>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교육급여와 동시 신청 유도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처리기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자체)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 학교는 시군구로부터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내용 통보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유의사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미지원) ○ 분교에 재학 중인 경우, 분교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 </td> </tr> </table>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학생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 온라인신청 가능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생략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22년 집중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2022. 3. 2.(수) ~ 3. 18.(금)</u>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교육급여와 동시 신청 유도 	처리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자체)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 학교는 시군구로부터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내용 통보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미지원) ○ 분교에 재학 중인 경우, 분교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학생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 온라인신청 가능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생략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22년 집중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2022. 3. 2.(수) ~ 3. 18.(금)</u>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교육급여와 동시 신청 유도 										
처리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자체)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 학교는 시군구로부터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내용 통보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미지원) ○ 분교에 재학 중인 경우, 분교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 										

구 분		내 용																									
신청취소 (철회) 및 증지	신청취소 (철회) 및 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에 신청취소(철회) 요청(확인조사 대상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는 신청 접수 후 교육청에 통보 ○ 교육비 지원 증지는 학교에 직접 요청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p>※ 시·도교육감이 교육비 지원항목별로 기준 결정</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가구원수</th> <th>2인</th> <th>3인</th> <th>4인</th> <th>5인</th> </tr> </thead> <tbody> <tr> <td>중위소득 50% 이하</td> <td>1,630,043</td> <td>2,097,351</td> <td>2,560,540</td> <td>3,012,258</td> </tr> <tr> <td>소득 인정액</td> <td>중위소득 52% 이하</td> <td>2,181,245</td> <td>2,662,962</td> <td>3,132,748</td> </tr> <tr> <td></td> <td>중위소득 60% 이하</td> <td>2,516,821</td> <td>3,072,648</td> <td>3,614,709</td> </tr> <tr> <td></td> <td>증위소득 80% 이하</td> <td>3,355,761</td> <td>4,096,864</td> <td>4,819,612</td> </tr> </tbody> </table>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50% 이하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52% 이하	2,181,245	2,662,962	3,132,748		중위소득 60% 이하	2,516,821	3,072,648	3,614,709		증위소득 80% 이하	3,355,761	4,096,864	4,819,612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50% 이하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52% 이하	2,181,245	2,662,962	3,132,748																							
	중위소득 60% 이하	2,516,821	3,072,648	3,614,709																							
	증위소득 80% 이하	3,355,761	4,096,864	4,819,612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4.17%/3), 금융재산(월6.26%/3), 자동차(월100%/3) 																									
	학교장추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학생 중 경제적 곤란 여부를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학교장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접수, 선정, 지원은 학교에서 수행 																									
	기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조사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구 분	내 용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급식비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교재비 등 포함)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 ※ 지원액 같은 시·도교육청별 상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급여, 한부모 등 법령에 의해 별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중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준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고,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년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교육정보화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 ※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 지원

II

업무처리 프로세스

1. 개괄



* 학교장 추천 절차는 제2편 II. 수급자 선정 및 지원 내용 참조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가. 신규 신청자

(1) 신청 (읍·면·동 또는 온라인)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신청서의 ‘선택적 동의, 유의 및 안내사항’을 먼저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등을 행복e음으로 조회하여 반영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한 경우, 상담과정에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신청인 서명을 하여 제출하도록 함
 - *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 동시신청 간주함을 안내(신청서 2면 ‘선택적동의’ 참고).
 - 단,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만 신청 가능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고지(교육비 지원자로 이미 선정된 자가 재신청하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지원항목이 탈락 결정될 가능성의 있음을 사전 고지)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회원권 등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
 - *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제공을 위한 동의서 내용을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하고, 동의할 경우 동의서 징구. 단,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 * 별도 서식 4호
- ※ 교육정보화지원 동의서 징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징구 및 추가제출 서류 안내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등)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무료임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인이 재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각종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도록 안내

- 예외 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신청서 등록 후 행복e음(또는 통합조사관리팀) 이관
 - 행복e음에 신청서 정보 입력·등록
 - 신청·접수시 구성된 조사가구정보로 조사업무(공적자료요청 및 반영, 소득 인정액 계산)가 자동처리 되므로, 정확한 조사가구구성을 위해 가족관계 확인에 철저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록
 - 온라인 신청건은 접수확인 처리 후 행복e음(또는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이관

(2) 조사 (행복e음 또는 통합조사관리팀)

-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요청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조회요청 (금융재산 조회요청 포함)
- 추가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는 경우 민원인이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함

- 조사결과 반영
 - 신청서 접수 시 신고 된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실태조사 결과, 금융재산 조회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소득인정액 산출
 - 신청서 및 소득인정액 정보를 행복e음에서 나이스로 전송

※ 시스템 자동 처리 범위

-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한 경우
 - 공적자료 조회 요청 및 조사결과 반영, 조사결과 나이스 전송을 행복e음에서 자동 처리
- 교육급여 등 타 서비스와 교육비 지원을 같이 신청한 경우
 - 행복e음에서 자동 처리 불가 (기준과 동일하게 수작업 필요)
 -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도 행복e음 자동 처리 불가

(3) 보장결정 및 결과 통지 (학교, 교육청)

- 각 교육비 별로 보장 결정 후, 수급자에게 결정 내용 통지

(4)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수행하되, 교육비 신청서 기재 사항, 소득·재산 조사 관련 이의 신청은 읍면동(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처리

나. 기존수급자 변동분 처리 절차

(1)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시스템)

- 가구원의 소득재산정보, 인적정보 등 공적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복e음을 통해 알림 기능 제공

^{*} 거주지 변동사항, 가구원 변동사항은 매일 알림

(2)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재산 변동
 - 공적 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에 자동반영됨

- 가구원 인적변동

- 거주지 변동(전출·전입), 가구원 변동(사망, 말소 등)시 알림
- 전출입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시 보장가구 재구성

※ 보장가구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시 처리방법

구분	구 거주지에서 할일	신 거주지에서 할일
가구 전체 거주지 변경	① 시스템에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② 원본 서류 보관 (필요시 스캔본 송부)	① 시스템에서 전입 자동처리 후 알림 ②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가구원 일부 거주지 변경	① 시스템에서 수급자의 전출시에만 거주지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② 수급자의 전출시 전출통보 ③ 원본 서류 보관 (필요시 스캔본 송부)	① 시스템에서 수급자(학생)의 전입시 자동처리 후 알림 ②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 변동적용

- 소득·재산 변동 및 가구원인적변동은 행복e음에서 반영 처리하나, 자격은
변동 처리하지 않음
- 확인조사시 별도 가구원변동을 처리하지 않기 위하여 전출입등으로 인지된
시점에 인적변동 반영 처리

다. 기존수급자 수급자격 관리

(1)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통합조사관리팀)

-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행복e음에 의해 자동 알림
-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므로, 별도의 재책정 처리는 불필요함
- 단, 교육비 지원 기준이 다른 시·도 소재 학교로 전출 시, 해당 시·도의 기준에 따라 지원(학교)

(2) 보장중지 결정·통보 (학교, 교육청)

- 학생이 자퇴·퇴학한 경우, 보장을 중지하고 나이스-행복e음 연계를 통해 중지 이력 통보
 - 휴학한 경우는 보장대상자 자격 유지 (교육비 지급만 중단)
 - 자퇴·퇴학한 학생이 재입학을 하는 경우, 교육비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 단, 학생이 사망한 경우는 행복e음에서 나이스로 보장 중지 자동 통보

3. 시군구·읍면동, 교육청·학교의 역할

가. 추진방향

- 교육비 신청·접수, 소득·재산 조사 업무 위임에 따른 지자체 업무 부담 최소화
- 원활한 교육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나. 업무분장

주체	업무 담당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업무 담당자 교육 ◦ 읍면동 근무 인력 지원 계획 수립·추진 ◦ 소득·재산 조사, 변동·확인조사 수행 ◦ 소득·재산 조회 관련 민원 상담 ◦ 소득·재산 관련 부정 수급 조사
읍면동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신청서 검증·접수 (온라인 신청 포함) ◦ 교육비 지원 신청 절차 상담 ◦ 소득·재산 조회 관련 민원 상담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예산(읍면동 지원 예산 포함) 편성·집행 ◦ 학부모·학생·교직원 대상 홍보 및 교직원 교육 ◦ 지역 상담센터 운영 및 기관 문의 대응(시군구, 읍면동, 학교 등) ◦ 단위학교 지도·감독 ◦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지원·중단 (교육정보화 지원) ◦ 부정 수급 신고 접수, 처리 결과 관리
각급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학생 대상 홍보 ◦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지원·중단 ◦ 학교장추천 대상자 선정·지원·중단 ◦ 교육비 지원 절차 상담 ◦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관련 민원 상담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

I

교육비 신청 및 교육비 납부유예

1. 신청

가. 신청 주체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함
 - 온라인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
 - 가구원(학생 포함)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신청 시, 가구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함 (II.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참조)
 -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 별로 신청
 - 사생활 보호 대상자인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교육비 신청
- 신청 간주 대상자
 - '21년 교육비 지원자(확인조사 대상자)는 '22년 교육비 신청 불필요
 - ※ Ⅲ. 조사 1. 조사의 종류 참조
 - ※ 확인조사 대상 여부는 행복e음에서 조회 가능
 - 확인조사 대상자의 가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으로 처리

나. 신청 기간 및 장소

- 집중신청기간 : 2022. 3. 2.(수) ~ 3. 18.(금)
 -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교육급여 및 교육비 동시 신청 유도

-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기본재산액 적용

- 온라인 신청 가능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 부모, 학생이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 ※ 19세 이상의 형제를 가구원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 단, 가구원(학생 포함) 중 외국인이 있거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다.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 3서식)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별도서식 4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용 구비서류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등)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무료임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시 임차·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법원 인정 사채를 기재(입력)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 후 시스템에 업로드

라. 처리기한 :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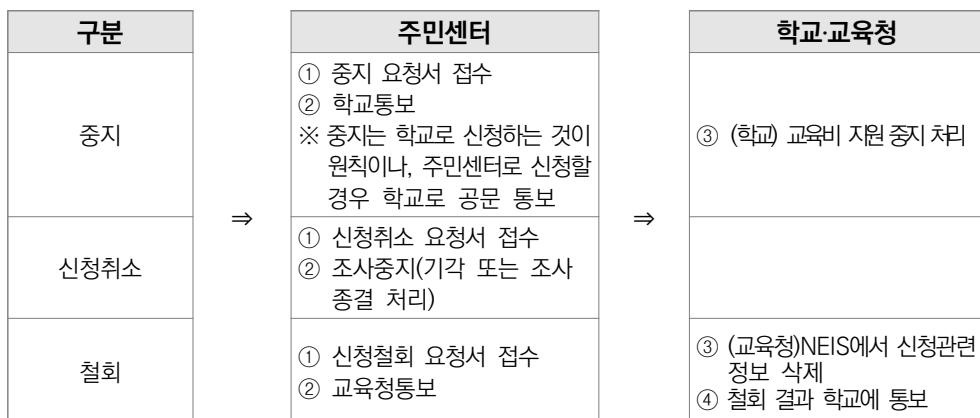
※ 학교는 시군구로부터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내용을 통보

마. 신청시 안내사항

- 처리기한 :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 제출서류 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 심사결과 통지 방법 : 학교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
- 신고의 의무
 - 세대 구성의 변동사항(이혼, 재혼, 출생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조사 협조의 의무
 -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증지할 수 있음을 안내
- 동의사항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 고지사항 안내
 -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 기타 교육비 지원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수집된 정보는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 온라인 신청 시,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접수가능

바. 신청의 취소(철회)

- 신규신청자와 신청간주자(확인조사 대상자)가 '22년 교육비 지원의 신청 취소(철회)를 원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취소(철회)를 요청
- 구비서류
 -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서(별도 서식 2호)
- 안내사항
 - 교육비 지원받는 학생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신청취소(철회)를 희망하는 학생 모두 기재하여야 함
 - 신청취소(철회)시 4대 교육비(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교육 정보화비) 등이 지원되지 않음을 안내
 -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 학생이 다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함을 안내
- 처리 절차
 - 신규신청자의 신청 결과가 나이스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시군구·주민센터는 행복e음에서 신청 기각 또는 조사 종결 처리
 - 신규신청자의 신청결과가 나이스로 전송되었거나, 신청간주자인 경우, 시군구·주민 센터는 신청 취소(철회) 요청서를 접수하고 학교 및 교육청에 통보



2. 접수

가. 신청 등록

- 읍·면·동 담당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행복e음에 등록하면서 신청일 입력
 - 제출된 각종 서류는 행복e음에 스캔하여 등록
 -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나. 접수의 효력발생 시기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일을 ‘신청일’로 함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고,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년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
 - 단, 교육정보화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정함

※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 지원

* 단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신청 당시 교육비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학교에 전송된 시점에 변경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준이 변경된 시점부터 지원 (예시 : 2월에 교육비 지원 신청(지원기준 중위소득 52%) → 3월에 교육비 지원 기준 변동(지원기준 중위소득 60%) → 4월에 소득재산조사 결과 중위소득 54%인 경우, 3월부터 교육비 지원 시작)

3. 교육비 납부유예

가. 법정자격 대상자 '22년 교육비 납부 유예 (교육청·학교)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22년 심사 완료 시까지 교육비 납부 독촉 금지 및 CMS 계좌 인출 유예

*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명단 확인 가능

- 신입생 예비소집 시, 법정자격 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학교로 제출하면 교육비 납부유예됨을 학부모에 안내
 - 납부유예 신청은 입학 등록으로 간주
 - 납부유예 신청자 중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적이 없는 자의 경우,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함을 안내
-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교육비를 납부해야 함을 학부모에게 별도 고지
- ※ 고지 과정에서 학생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교육비 지원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교육비를 납부해야 함

II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1. 보장의 단위

가. 개인단위 보장

- 교육비는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결과에 따라 해당 학생의 지원 여부 결정

나. 가구원의 범위

구분	가구원 범위
① 동일 주민등록	<p>〈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및 형제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로운 형제·자매 포함 <p>〈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해체로 인해 학생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 조부모와 형제·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해체 : 이혼, 행방불명, 이민, 부모 사망 등 - 성인 학생(19세 이상)인 경우, 그 배우자
② 별도 주민등록	<p>〈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및 형제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로운 형제·자매 포함 <p>〈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학생(19세 이상)인 경우, 그 배우자

*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지원대상 학생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해당 학생 및 '나. 가구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국내 증빙서류로 가구원 확인이 곤란하므로 교육비 신청 불가(학교장 추천은 가능)

○ 가구원에서 제외 되는 경우

- 학생의 부(모)·형제(자매)가 군 복무중(의무 복무 한정)이거나 재소자인 경우

※ 단,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가구원에 포함 (19세 이상 포함 여부 선택 가능)

-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

※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단, 이혼숙려제는 이혼 취하의 가능성에 있으므로 가구원 제외 불가)

- 행방불명된 부(모)

※ 부모와 연락이 두절되고 학생의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와 상담 후 행방불명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서(별도 서식 3호) 징구 후 행복e음에서 상담기록 기재

- 주민등록 거소불명인 부모, 형제·자매

- 사실혼 관계 가구원

- 성인인 학생인 경우, 그 부모와 자녀

-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단독 가구로 구성하는 경우

-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1인 단독 가구로 구성 (형제가 있더라도 각각 신청)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는 시설장이 대리 작성·제출

○ 가정 폭력 등으로 모자 가정이 별도 시설에서 보호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 후 모자로만 가구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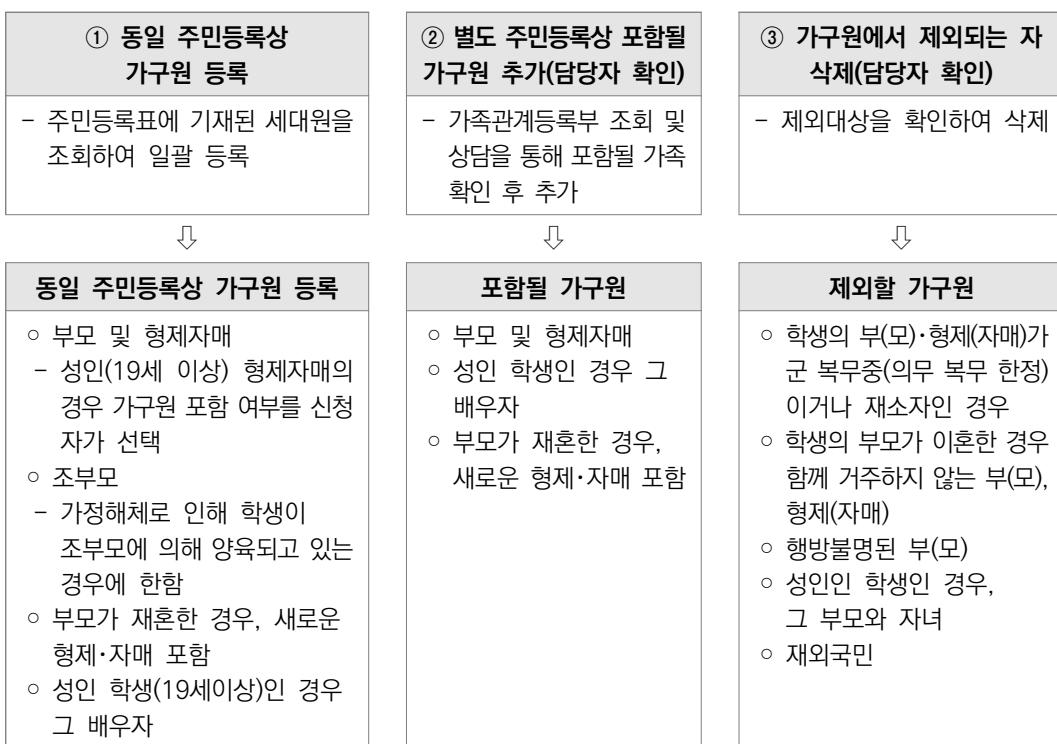
- 이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서 작성 가능

○ 신청일 이후 출생·입양·사망 등 가구원 변동은 미반영

다. 가구 범위 확정 절차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 추가
-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 보장가구원의 관계는 학생을 기준으로 관계 입력

※ 가구구성 처리 절차



2. 선정기준 및 교육비 지원 내용

가. 공통 기준

- 초·중·고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
 - 기초, 한부모, 차상위 등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경우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31p. 난민 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지원 참조)

< 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 >

교육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고교 학비		60%	60%	60% (학교장)	60%	- (무상)	60% (학교장)	60% (학교장)	- (무상)
급식비		60% (학교장)	- (무상)	- (무상)	60%	- (무상)	- (무상)	135%	- (무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70%	80% (학교장 등)	80% (학교장 등)	70% (학교장)	80% (학교장 등)	80% (학교장 등)	80% (학교장, 딸자녀 등)	80% (학교장 등)
정보화 지원	컴 퓨 터	-	의료	교육	교육	의료	의료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	의료	교육
	인 터 넷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60%, 난민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학교장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학교장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60%, 난민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교육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교 학비		60% (학교장)	80% (학교장)	- (무상)	70% (학교장, 딸자녀 등)	68% (학교장, 딸자녀 등)	60% (학교장 등)	68% (학교장, 딸자녀 등)	- (무상)	- (무상)
급식비		60% (학교장)	- (무상)	52% (학교장)	60% (학교장, 딸자녀)	- (무상)	- (무상)	- (무상)	- (무상)	- (무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70% (학교장 등)	80% (학교장 등)	80% (학교장, 딸자녀 등)	80% (학교장, 딸자녀 등)	80% (학교장, 딸자녀 등)	70% (학교장, 딸자녀 등)	80% (학교장 등)	80% (학교장 등)	70% (학교장, 딸자녀 등)
정보화 지원	컴 퓨 터	의료 난민	의료 한부모	교육	의료	교육 한부모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	생계	-	교육
	인 터 넷	교육 한부모 난민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60%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학교장) 표시는 학교장 추천을, (딸자녀) 표시는 딸자녀 지원을, (무상) 표시는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곳임

- 중위소득 기준 환산표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u>2022 기준 중위소득</u> (보건복지부고시)	<u>1,944,812</u>	<u>3,260,085</u>	<u>4,194,701</u>	<u>5,121,080</u>	<u>6,024,515</u>	<u>6,907,004</u>
소득 인정 액	중위소득 50% 이하	<u>972,406</u>	<u>1,630,043</u>	<u>2,097,351</u>	<u>2,560,540</u>	<u>3,012,258</u>
	중위소득 52% 이하	<u>1,011,302</u>	<u>1,695,244</u>	<u>2,181,245</u>	<u>2,662,962</u>	<u>3,132,748</u>
	중위소득 60% 이하	<u>1,166,887</u>	<u>1,956,051</u>	<u>2,516,821</u>	<u>3,072,648</u>	<u>3,614,709</u>
	중위소득 80% 이하	<u>1,555,850</u>	<u>2,608,068</u>	<u>3,355,761</u>	<u>4,096,864</u>	<u>4,819,612</u>
						<u>5,525,603</u>

- 국립학교는 소재지 시도교육청의 지원 기준을 준용
-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대상자라도 교육비 미신청시 미지원
- 자퇴, 퇴학한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인삶의질법, 댐건설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등을 지원받은 학생은 타 지역 학교 진학 시 반드시 신청 필요

나. 고교 학비

- 지원 내용
 - 입학금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발생하는 입학금 전액
 - 수업료 :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 * 단,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액 결정
 -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징수하는 경비 전액
 - * 입학금·수업료는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금액을 정하며,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자체적으로 금액 결정
- 지원 대상 : 무상교육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 초·중·특수학교 학생은 의무교육, 고등학교 학생은 고교무상교육으로 학비 면제

○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중위소득 환산 기준	60%	60%	60% (학교장)	60%	- (무상)	60% (학교장)	60% (학교장)	- (무상)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위소득 환산 기준	60% (학교장)	80% (학교장)	- (무상)	70% (학교장, 다자녀 등)	68% (학교장, 다자녀 등)	60% (학교장 등)	68% (학교장, 다자녀 등)	- (무상)	- (무상)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학교장) 표시는 학교장 추천을, (다자녀) 표시는 다자녀 지원을, (무상) 표시는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곳임

○ 중복 지원 제한 사항(학교에서 확인)

- 법령에 따라 고교 학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는 경우 중복 지원 제한
 - (법정 면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북한이탈주민, 특수교육대상자 등은 고교 학비를 전액 면제 받으므로 중복 지원 제한
 -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농어촌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자녀, 장애인 자녀, 의사상자 자녀, 공무원(학비보조 수당) 등은 고교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받으므로, 지원 받는 범위 내에서 중복 지원 제한

※ 예) 교육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 받으므로 중복 지원을 하지 않으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급여에서 지원받지 못하므로, 학교운영지원비만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

다. 급식비

- 지원 내용 : 초·중·고교 학기 중 중식비 전액
- 지원 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 단, 무상 급식 실시 학년 및 지역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므로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토·공휴일, 방학 중 급식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

○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중위소득 환산 기준	60% (학교장)	- (무상)	- (무상)	60%	- (무상)	- (무상)	135%	- (무상)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위소득 환산 기준	60% (학교장)	- (무상)	52% (학교장)	60% (학교장, 다자녀)	- (무상)	- (무상)	- (무상)	- (무상)	- (무상)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학교장) 표시는 학교장 추천을, (무상) 표시는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곳임

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지원 내용 :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통상 연 60만원 내외(교재비, 재료비 등 포함)

※ 시·도교육청별 지원 금액 및 범위 상이

- 지원 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중위소득 환산 기준	70%	80% (학교장 등)	80% (학교장 등)	70% (학교장)	80% (학교장 등)	80% (학교장 등)	80% (학교장, 다자녀 등)	80% (학교장 등)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위소득 환산 기준	70% (학교장 등)	80% (학교장 등)	80% (학교장, 다자녀 등)	80% (학교장, 다자녀 등)	80% (학교장, 다자녀 등)	70% (학교장, 다자녀 등)	80% (학교장 등)	80% (학교장 등)	70% (학교장, 다자녀 등)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학교장) 표시는 학교장 추천을, (다자녀) 표시는 다자녀 지원을 하는 곳임

마.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 내용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 지원 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 지원 내용 및 대상이 일부 상이
- 지원 방법 : 인터넷통신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하고 PC는 학생가구를 방문하여 설치
-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컴퓨터	-	의료	교육	교육	의료	의료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	의료	교육	
인터넷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60%,난민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학교장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학교장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60%,난민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컴퓨터	의료 난민	의료 한부모	교육	의료	교육 한부모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	생계	-	교육
인터넷	교육 한부모 난민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60%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 중복 지원 제한 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 지원 제한,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준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 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바. 학교장 추천 지원(교육청·학교)

1) 제도 개요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실시
 -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교사가 추천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각종 교육비 지원
 -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유의사항’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절차 진행

〈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제도 개요 〉

- ▶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제2호
- ▶ 대상 : 소득·재산조사 결과 탈락하거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 절차 : 보호자 면담(교육비 탈락 또는 신청할 수 없는 예외적 사유 확인) →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

※ 학교장 추천비율^{*}이 10% 초과하는 경우, 학교 별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지원하되, 다음과 같은 신취약계층을 추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비율을 15%까지 확대 운영 할 수 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
- 다자녀 가정 학생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 학교장 추천비율(%) = (지원항목 별 학교장 추천 지원학생 수 / 지원항목 별 교육비지원 선정학생 수) × 100

** 시도교육청 별로 관련 위원회 구성 등 승인절차를 마련하여 학교별 학교장 추천 지원의 적정 여부를 심사·결정

※ 참고

1. 지원항목 별 교육비 지원 선정학생 수 : 당해연도 5월 31일 기준
2. 지원항목 별 교육비 지원 선정학생 수가 10%(10명) / 15%(15명) 이하인 경우, 학교장 추천 지원가능 학생 수는 1명 / 2명으로 함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예시

- 부양의무자의 사망,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모의 이혼, 가계파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갑작스런 실직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채권 압류 및 기타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희귀, 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매출·소득감소가 발생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
- 미등록이주아동, 다자녀 가정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여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은 경우, 확인조사 대상자로 다음 학년도(진학 포함)에 교육비 지원 신청 없이도 행복e음 소득·재산 조사 후 교육비 지원 여부 결정
-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여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학년도에 한해 지원되며, 확인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음 학년도(진학 포함)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거나, 다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함

2) 학교장 추천 절차

- ① 교육비 지원 탈락자 또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자 중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보호자와 면담
-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선정된 자의 정보가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안내
- ② 담임교사 또는 업무 담당자가 보호자 동의하에 추천서 작성·제출
-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 〉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③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보호자의 근로 능력,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소득인정액은 참고자료로 활용
 -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 소득·재산이 없는 혈족을 부양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관
 - ※ 부득이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 학생 이름은 가명이나 기호로 처리

④ 학교장 추천 대상자 교육비 지원(나이스 처리 병행)

- ※ 나이스 시스템에 등록된 학교장 추천자에 대한 정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자체 등에서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3)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자율)

- 학교장 추천 대상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교육비만 지원할 수 있음
 - ※ 예) 입학금, 수업료만 지원하고 학교운영지원비는 미지원 등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수시 구제를 위하여 학교장 추천을 상·하반기로 분리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

4) 지원 기간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에서 해당 학년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기간 결정

5) 지원 대상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고교 학비	-	-	○	-	-	○	○	-
급식비	○	-	-	-	-	-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	○	○	○	○	○	○
인터넷통신비	-	○	○	-	-	-	-	-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교 학비	○	○	-	○	○	○	○	-	-
급식비	○	-	○	○	-	-	-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	○	○	○	○	○	○	○
인터넷통신비	-	-	-	-	-	-	-	-	-

※ ○표시는 학교장 추천 지원 실시 항목임

사. 난민 인정자 지원 및 특별기여자 지원(교육청·학교)

○ 제도 개요

- 사업 근거 : 「난민법」제33조, 「난민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난민법 시행규칙」제13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4조의2
- 지원 대상 :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인정자,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교육비 지원 항목 및 범위 : [붙임1] 참조(p90~106)

○ 운영 절차



※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인정자 지위의 계속 여부 확인 가능



제3편

조사



I

조사개요

1. 조사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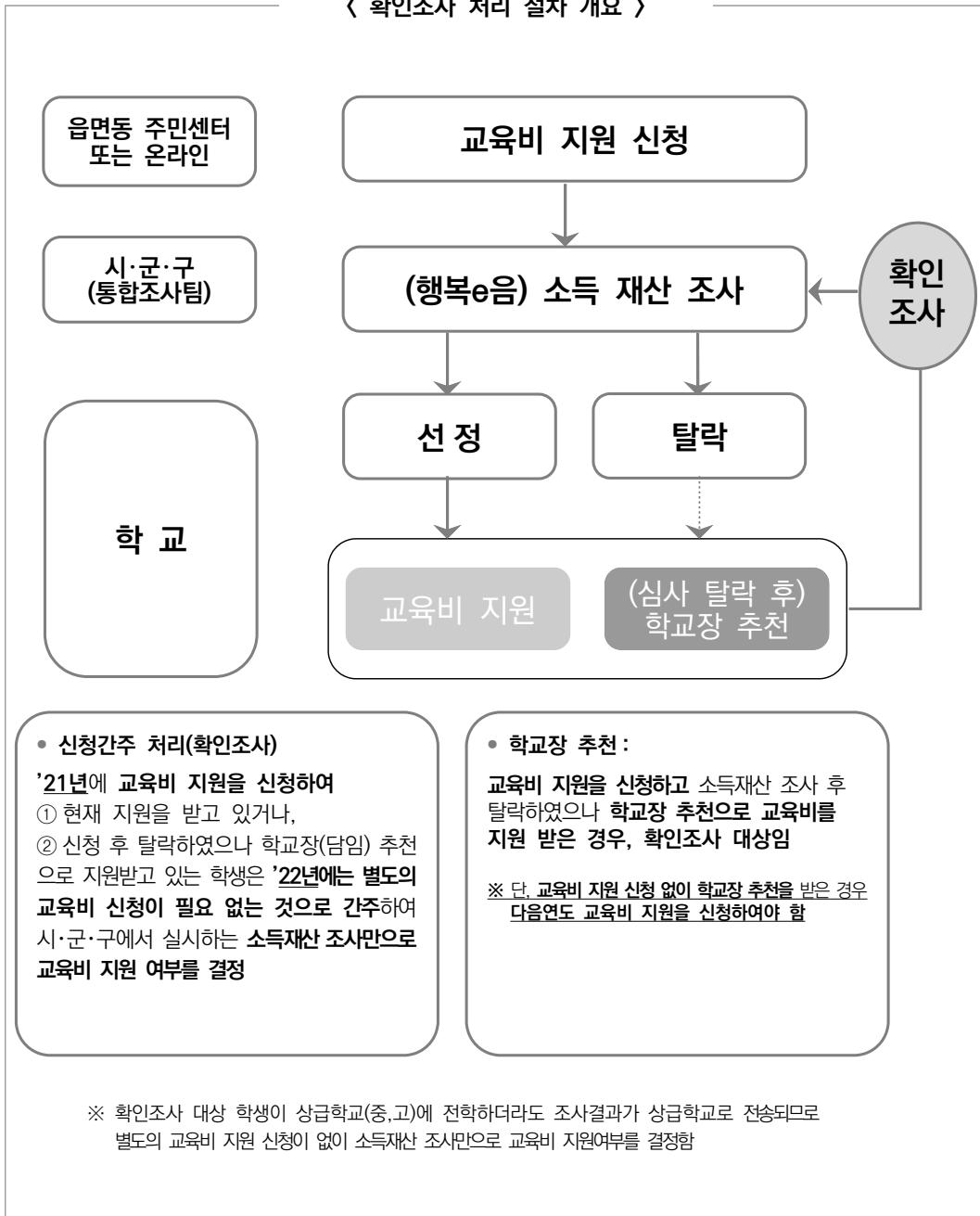
- 신청조사 : 교육비 신청 시 교육비 지원 여부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
- 확인조사 : 교육비를 지원 받는 학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 행복e음으로 제공되는 공적자료를 통해 조사

〈 확인조사 대상 〉

- 확인조사 실시 대상
 - '21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 1종 이상을 계속해서 지원 받은 학생
 - ※ '20년에 교육비를 지원 받았으나, '21년에 교육비 지원 받지 못한 경우 '22년도 교육비 지원 신청 필요
 - '21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한 후 탈락하였으나, 학교장 추천으로 계속해서 지원받고 있는 학생
- 확인조사 미실시
 - 고교 졸업생, '21년에 주민센터 신청 없이 학교장추천으로 지원 받은 학생, 학교에 교육비 지원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학교에서 나이스에 기재한 교육비 지원 여부를 바탕으로 확인조사 포함 여부 결정
('21.10월까지 나이스로 교육비 지원 항목이 1가지 이상 선정으로 결재 완료된 학생)
- 확인조사 대상자는 '21년도 신청서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규 신청 불요
 - ※ 확인조사 대상 학생이 상급학교(중,고)에 진학하더라도 조사 결과가 상급 학교로 전송됨
 - ※ '22학년도 교육비 지원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를 학부모가 주민센터(행복e음) 또는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에서 '22.3월부터 확인 가능
- * 교육비 신청대상 여부 조회 기간은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을 통해 별도 안내

〈 확인조사 처리 절차 개요 〉



2. 조사대상과 내용

-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조사원칙

- 자산조사는 행복e음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 행복e음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행복e음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행복e음에 등록

4. 조사 제외 대상자

- 타 제도에 의해 급여지원 자격이 결정된 경우 별도의 조사 없이 자료전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차상위장애인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차상위자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및 그 가구원
- ※ 행복e음을 통해 저소득층 수급 자격 확인이 가능하며,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자격을 보유할 경우 소득·재산 조사 제외 처리

5. 조사절차(신청조사)



6. 자료제출 요구

- 행복e음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교육비 지원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행복e음이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 가능

〈 제출서류 목록 〉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 고
가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방불명자는 가구원에서 제외 ※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제출서류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임금확인서 ○ 월급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근로소득 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신고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 확인조사 방법에 따라 적용
소득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퇴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퇴직사실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증명원 ○ 휴·폐업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소득 파악 ※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소득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소득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 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소득 파악(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 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임대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상태 확인
재산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 일자를 받은 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보증금 파악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미결제금 확인서 ○ 법원 판결문 등,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미결제금(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미결제금) ○ 개인 간 사채 확인 ○ 임대보증금 파악

7.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고
가급적 추가 방문 최소화
- 공적자료 조회 결과 추가로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검색하여 안내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추가 신청

II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 조사대상인 소득항목에서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2. 실제소득의 범위

-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소득)
-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적 금품

3. 소득 산정기준

- 상시근로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을 산정
 - 단, 육아, 학업, 기타 등의 사유로 자발적 휴직 중인 자의 소득은 휴직 전 소득을 참고하여 철저히 파악 후 반영

※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전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1)

※ 임금체불확인서 불인정 - 체불 후 소득 수령 시점의 차이일 뿐 추후 수령할 금액이기 때문에 차감 불인정

1) 상시근로소득자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하여 일시적인 월보수 변동(군인 등)으로 인해 급여가 빈번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실직·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는 이를 바로 반영하여 급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일용근로자소득, 기타 사업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²⁾

*** 확인조사(정기)시 일용근로자소득 산정 기준**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를 반영할 경우 ‘최근 6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공적자료로 연계된 전전분기와 전전분기의 월평균소득)
* 예) 12월 확인조사시 공적자료 반영시에는 1/4, 2/4분기의 월평균소득
- 공적자료가 현재의 일용근로자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소명한 경우에도 ‘최근 6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 예) 12월 확인조사시 최근 6개월간 소명자료 반영시에는 전전분기, 전분기 평균소득 반영

-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전월 소득’ 반영

4. 소득의 유형별 조사방법

가. 근로소득

(1) 정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2) 유형

-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자의 근로소득

2) 임시·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자는 적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기존의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계속 유지함

- 일용근로자 소득 : 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3) 조사방법

(가) 상시 근로자 소득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장애인고용장려금³⁾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며, 확인조사시에만 자료 제공
 -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3)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 →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신고자료
 * 장애인 고용부담금 : 상시근로자 100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 납부 → 장애인근로자의 월평균 금액 신고자료

- ※ 예)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상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시 수정결과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나) 일용 근로자 소득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⁴⁾) 조회 결과를 반영 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 다만,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또는 확인서 제출 시 제한적으로 인정
- ※ 고용주(사업주)가 분기별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공적자료로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대한 확인 지침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민원인이 주장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신고한 자료라는 것을 설명하고 아래 사항을 안내 후,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

- ① 근로하였으나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사업주로부터 받은 증빙서류 첨부)
 - ② 근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③ 조회내역은 사실이나, 현재 다른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현재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신고서 첨부)
 - 수급자 본인이 확인서에 서명하여 제출받을 것
- ※ ①, ②의 경우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사업주의 세액공제액이 조정됨을 민원인에 설명할 것
- ※ 확인조사시 정비화면에 입력된 내역은 시스템으로 취합하여 국세청으로 전달되므로, 확인서 징구 및 입력 작업 철저 요망
- ※ ③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이후 타 공적자료에 의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설명

4)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EITC(근로장려세제)제도시행을 위해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지급한 임금을 국세청으로 신고한 자료임

(다) 자활근로소득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월 행복e음에 등록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⁵⁾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참여로 얻는 수당 중 다음금액
 -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1단계 취업상담 참여수당(25만원/월), 장애인고용전환 촉진수당 30만원/월)
 - 취업성공수당(1인당 최대150만원, 장애인 고용 전환성공수당 최대100만원)
 - 자립성과금(분기당 최대 210만원)
 - 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최대 11.6만원/월)
 - 증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고용노동부)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최대 5만원/월)
 -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에 참여하는 구직단념청년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최대 50만원/월)
- 동일 사업장에서 자활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자활근로소득만 반영

(라)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⁶⁾의 임금은 행복e음으로 조회되어 반영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5) 열거되어 있는 사항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 미만인 단기간근로자

나. 사업소득

(1) 농업소득

(가) 정의

- 경종업(耕種業)⁷⁾,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⁸⁾, 특수작물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⁹⁾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농지원부)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
 - 농산물 소득정보의 단가를 참조하여 작황상황, 시장가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 산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자료를 통해 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2) 임업소득

(가) 정의

- 영림업(營林業)·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임목재산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임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7)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농업

8) 식물의 씨앗이나 모종, 묘목 따위를 생산·판매하는 업

9) 종축(번식용 가축)을 사육하고, 생산·판매하는 업

- 수급(권)자에게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3)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가) 정의

- 어업 및 양식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漁家) 및 양식업가가 어업 및 양식업 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나)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어업권 및 양식업권과 선박 보유여부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어업 및 양식업 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수급(권)자에게 수협의 어가별 및 양식업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및 양식업별 출하량 및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4) 기타 사업소득

(가) 정의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 2개이상 복수사업장의 사업소득 산정시 발생한 손실을 반영하여 합산하나,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반영하지 않음

-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자’의 소득은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국세청 소득자료보다 우선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
 - ※ 상시근로소득 공적자료 반영 순서와 동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 및 수급자 소유사업장 피고용인 수를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 명세서 등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는 소득을 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 예)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 등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가) 정의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귀속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참고)
 - ※ 임대소득은 국토교통부의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정보를 추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있으므로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요망

(2) 이자소득

(가) 정의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 공제액 24만원을 차감한 금액

※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이자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 – 24만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에서 조회되는 이자
소득으로 연 1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
** 생활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나)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이자소득 조회결과를 반영
- 이자소득 발생 적금·저축 등의 가입기간을 확인(계약원장사본, 통장사본, 해지영수증 등) 하여 12개월 초과 상품인 경우 초과된 개월수 (월단위산정)만큼 연간 최대 24만원(월2만원)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 가능

(3) 연금소득

(가) 정의 :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 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하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

(4) 그 외 기타소득은 보건복지부「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참조

III

재산조사

1. 재산의 종류

가. 일반재산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¹⁰⁾, 건축물¹¹⁾ 및 주택(제104조 제1호, 제2호, 제3호)
 -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 「지방세법」제6조제13호 및 제6조제13조의2호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 「지방세법」제6조제14호~제18호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나.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10) 논·밭·임야 등

11) 건물, 시설물 등

다. 자동차

-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재산의 조사범위

-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다만, 군복무·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3. 재산의 산정기준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 항목		산정 기준
일반 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 기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 (신고가액)
	•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기액, 금융회사등의 입증자료상의 기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기액 [*]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 토지(임야, 전답)

- 해당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누어 시가산정

$$\text{토지가격} = \text{시가표준액} \div \text{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 예)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격
 $\Rightarrow 1,000\text{만원}/0.9 = 1,111\text{만원}$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

지역	토지가격 적용율
서울특별시	0.9(전지역)
부산광역시	0.9(전지역)
대전광역시	0.9(전지역)
인천광역시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0.9(區지역) / 0.8(달성군)
광주광역시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울산광역시	0.9(區지역) / 0.8(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0.8(전지역)
경기도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처인구) / 0.6(용인시의 기흥구, 수지구)
강원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충청북도	0.9(청주시, 충주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청주시, 충주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청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남도	0.9(창원시, 진주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진주시, 진주시, 김해시, 사천시, 거제시, 통영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신장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0.9(전지역)

- 건축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4.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1) 토지, 건축물 및 주택

(가) 정의 : 「지방세법」제104조제1호~제3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제104조제1호)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지방세법」제6조제4호)
 - 건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

참고 유형별 시설종류

-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 옥외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소
- 도크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 급·배수시설 : 송수관, 옥외 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
- 기타시설 :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 부수시설물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 등

-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나) 조사방법¹²⁾

- 토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결과 토지 면적이 공부면적(공공문서 기록면적)과 현황면적(실제 측량된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면적 적용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토지가액은 지방세정 시가표준액(공시지가)으로 제시되며, 적용률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 적용
- 건축물
 - 건물, 시설물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가격 산정
- 주택¹³⁾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 건축물, 주택은 적용률 없이 시가표준액 바로 적용

(다)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재산산정 특례

- 아래 4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 해당 재산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이 곤란한 경우
 - 가구의 총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10,000만원, 중소도시 7,300만원, 농어촌 6,600만원 이내 (개발제한구역 소재 재산도 포함)

12) ※ 행복e음 조회시점에 재산세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와 법률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률상 소유자의 재산으로 산정
※ 미등록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산정하되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민법상 지분대로 반영

13) 최초 신청 전 이미 매각 주택 등의 재산 공적자료(행복e음) 확인 된 경우, 본인 소유 아니라는 소명자료(등기부등본 등) 제출받아 재산 산정 제외 처리

-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

※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소득환산율이 100%/3 으로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음

※ 다. 자동차 항목 참조(p.60)

(2) 임차보증금

(가) 정의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나) 조사방법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보정계수(0.95)를 곱하여 산출

$$\text{주택 임차보증금} = \text{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times \text{보정계수}(0.95)$$

※ 보정계수 설정취지 :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5%를 공제함

※ 행복e음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하면, 보정계수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반영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무료임대를 주장하는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징구

(3) 선박·항공기

(가)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6조 제9호 및 제10호)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 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¹⁴⁾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text{선박·항공기 가격} = \text{시가표준액} \times \text{보정계수}(3.5)$$

※ 보정계수 : 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조정

(4) 동산

(가) 정의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나) 조사방법

- 가축·종묘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
 - 각종 기계·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5) 입목재산

(가)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6조 제11호)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14) 보정계수 : 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20%이므로 시가의 70%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 (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 입목의 종류

- 산림목(총5종)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 유실수(총18종)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 풀

(나) 조사방법

- 입목재산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6) 회원권

(가)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7) 조합원입주권

(가)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나) 조사방법

-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8) 분양권

(가) 정의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9) 어업권 및 양식업권

(가)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 및 제6조제13의2호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 :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 「양식산업 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 등 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외해양식업, 내수면양식업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및 양식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나. 금융재산

(1) 정의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2)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3) 금융정보 등 조회

- 조회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 조사 대상자 : 보장가구원 (신청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징구)
-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 액면가액
※ 펀드, 양도성예금증서(CD), 예수금, 선물옵션도 행복e음에서 조회됨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 조회기준 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 조회절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 시군구(읍·면·동)에서 행복e음에 등록 →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행복e음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 조회주기 및 기준일
 - 신청조사 : 신청시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 확인조사 : 연 1회 조회 실시
- 유의사항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및 시스템 입력시, 조사대상 가구원과 동의서를 제출한 가구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시키도록 함
 -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 시, 법에 의해 처벌 됨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금융정보 제공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4) 조회결과 적용

-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

- (차명계좌)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 (도명계좌) 수사기간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 공동목적을 위한 단체운영비, 회비관리임을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국세청에서 발급 받은 고유번호증으로 통장을 개설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5)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우선 반영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사용처에 따른 재산의 이동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유형으로 변경. 단, 변경은 일시금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반영

용도	증빙서류
일시금의 출금 확인	일시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다. 자동차

(1)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행복e음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를 반영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 (1순위) 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국토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3) 조회결과 적용

- 공동명의인 경우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차량 가액 전액을 가구원의 재산으로 산정
- 자동차 분실·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서 제외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 명의도용 등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법인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의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 확인사항 : 단체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등록증, 법인·단체의 지출증빙서류(자동차세납부, 유류비 지출여부 등) 등

(4)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가)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함.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장애인 사용자동차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사용 자동차로써 1~3급 장애인 (상이등급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배기량 2,500cc미만 차량
 -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
 - 2,500cc 이상의 개인택시
- 차령 6년 이상인 차량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¹⁵⁾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된 자동차
- 이륜자동차 중 50cc이상 260cc 이하 차량
-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 믹서 트럭
- 특수자동차(견인, 구난용 등)

(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3 적용되는 자동차

- 적용대상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한 자동차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만 재산에서 제외 가능
- 명의도용 등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폐차 처리하였으나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말소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차증을 증빙서류로 제출 (폐차입고증 불가)
- 자동차 중개업자의 경우 자동차 등기부등본상 "상품용"이라고 등록된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

15)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23호에 의거 자동차의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까지 거리가 자동차 전체길이의 4분 1 이내인 차량(다마스, 봉고, 라보,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IV

소득인정액 산정

1.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
실제소득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 월4.17%/3 금융재산 : 월6.26%/3 승용차 : 월100%/3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값은 “0원”으로 처리

가. 기본재산액

- 개념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¹⁶⁾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도의 “시”, (농어촌) 도의 “군”
 ※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소도시 기준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1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으로 본다.

나. 부채

(1) 정의

- 임대보증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
 ※ 금융회사등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는 용어)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도 포함

(2) 재산가액에서 참가하는 부채의 범위

(가) 부채의 종류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은 개인신용회복지원이 적용되면 채무원금의 일부와 연체 이자 전액이 감면되며, 기초수급자는 특수채무자로 분류되어 채무원금이 추가 감면되므로 캠코에서 인수한 수급자는 실제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부채로 차감 필요
 - 한국해비타트(사)에서 집짓기 사업을 지원받아 주택을 소유한 수급(권)자의 상환 대상 지원금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채가 확인된 경우
 ※ (유의) 이 경우 매월 지원금의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지원금 상환액을 확인하여 부채액 조정 필요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 공정증서 확인 사채는 2014년부터 전액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나) 차감대상 부채금액

-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

(다) 부채의 용도 및 확인방법

- 의료비부채 : 의료·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비 사용을 증빙할 서류
- 학비부채 : 등록금 영수증 등 학비사용을 증빙할 서류
- 주거부채 : 전·월세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주거마련을 증빙할 서류
- 일반부채 :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3) 조사방법

- 금융회사 등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회사 등의 대출내역 확인
 - 금융회사 등 대출금 중 대부(중개)업체의 대출 정보는 현재 정보 미연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대출금 증빙서류(부채증명서 등)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 및 6개월 단위로 대출내역 변동 사항을 재확인하여야 함
 - 그 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에 해당되고 용도가 확인되는 부채는 부채증명서와 필요시 사용처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반영

-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 법원의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또는 화해·조정조서에 따라 채무이행 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자납입 증명(2회 이상)을 요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금융회사의 대출내역

- 제공방법 : 금융정보 등 조회 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이 가능(단, 대부(중개)업체의 대출내역은 현재 제공되지 않으므로 대상자에게 증명 요구)
- 제공내역
 - 금융회사 대출금 : 담보대출(부동산 등), 신용대출, 약관대출(보험) 등 개인이 받은 '개인대출'만 차감 가능하며, 기업대출은 차감대상이 아님
 -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 신용카드 미결제금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 가능도록 연계 확대

-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금융재산 증가 또는 타 목적으로 기지출 여부 등 현재 보유상태를 파악
 - 처리방식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타재산 증가분(금융재산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이므로 임대보증금 부채로 반영
 -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해당 건물 등은 일반재산 가액으로 산정하며, 만약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도 산정함
 - 유의사항 : 수급(권)자가 임대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보유 시 또는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이중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 ※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 시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을 동일하게 적용
 - ※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보유(구입)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주택 가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

(4) 부채차감 순서

- 1순위 : 주거용재산, 2순위 : 일반재산(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포함), 3순위 :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 상기 재산을 모두 차감하였음에도 부채의 잔액이 남는 경우라도,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5)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 된 경우 (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
- ※ 신용회복위원회는 수급자에게 부채를 빌려준 채권기관이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가 확인해준 수급자의 부채는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자료를 취합한 것에 불과함,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한 부채는 원 채권기관인 금융기관 등에서 해당 부채 증명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 간 부채

(6) 부채로 인정 시 유의사항

- 용도확인이 필요한 부채가 확인된 경우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

※ 공공기관에서 1천만원을 얻어 기존 보유재산 1천만원을 합하여 2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2천만원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하고, 1천만원은 부채로 차감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등의 부채가 보장기관의 확인 결과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
 -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대부업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채를 얻은 경우
 - 그동안의 생활실태를 보아 부채의 필요 상황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소득수준과 재산에 비하여 과도한 부채를 얻은 경우 등

※ 일반적으로 부채는 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출을 위하여,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사업 투자를 위하여, 단기간의 건강악화·실직·폐업 등으로 근로·사업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여 생활비의 부족으로 부채를 얻는 것을 고려 시,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재산과 소득 상태에 비추어 과도한 부채를 얻은 경우는 그 부채를 얻은 이유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음

- 부채의 용도를 채무자(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모두 포함)가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 보장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이더라도 부채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
 - ①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담당자의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 ② 사실조사보고서를 포함하여 부채의 차감여부 결정 건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재산가액에서 해당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음

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환산율	월 4.17%/3	월 6.26%/3	월 1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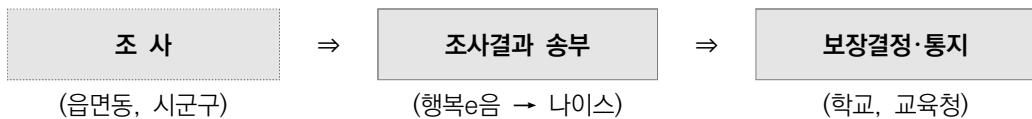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I

보장결정 및 통지

1. 개요

- 각급 학교 및 교육청은 지침에 의한 기준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장여부 및 교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통지함
- 보장결정 절차



2. 조사결과 송부

- 신청인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후, 행복e음에서 소득인정액을 나이스로 전송
 - 신청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조사 결과를 교육청(학교)로 제공하되,
 - '21년 교육비 지원자(확인조사자)의 조사 결과는 '22.4월 말까지 교육청(학교)으로 제공 예정
- ※ 신청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학교 코드 오기재 등) 전송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자세한 심사 일정은 학교에서 결정
-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나이스로 전송하였으나, 교육청(학교) 나이스 시스템에서 신청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시군구(통합조사팀)에서 직권으로 조사결과 재전송 가능
- 나이스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환산
 - 소득인정액에 따라 계산된 중위소득의 소수점 단위는 절사

(예 : 중위소득 60.9% → 60%)

3. 보장결정 및 통지

-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감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자 결정
 - '22.4~5월 중 집중 심사·통보 기간 운영 예정
 -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교육비를 한 번에 심사하거나, 각 교육비별로 심사 가능

〈 교육비 심사 방법 안내 〉

- 학비 면제자, 교육급여 수급자의 고교 학비 심사 안내
 - (국가유공자 등 학비면제자) 고교 학비가 면제되므로 탈락으로 심사 (사유 : 타 지원 학생)하되 심사결과 미통보
 - (교육급여 수급자)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으로 심사하고, 입학금·수업료는 탈락으로 처리하되 심사결과 미통보
 - ※ 입학금, 수업료는 교육급여로 지원
- 무상교육(고교학비), 무상 급식, 농어촌 방과후 지원 학교인 경우
 - 교육비 지원 내용이 아니므로 심사 대상이 아님 (나이스에서 심사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교육청에서 심사제외 조치, 나이스 프로그램 매뉴얼 참고)
- 지원 기준에 해당하나 본인의 지원 중단 요청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이스에서 아래 해당 사유를 선택하고 탈락으로 심사
 - ※ 재학생 아님(자퇴, 퇴학, 전출 등), 지원 거부, 기타(사유 직접 기재)
 - ※ 타 지원 학생의 경우 심사결과 미통보
- 지원 결정 후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 등) 자격이 변동된 경우, 교육비는 소득·재산 조사 시의 법정자격을 기준으로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므로 지원 결정 이후 자격 변동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 확인조사의 경우, 3월 말 법정자격을 기준으로 차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
 - 학교는 나이스 전송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학부모는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조사 시 자료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 가능
- 나이스 심사화면에서 학생자격과 가구자격이 다른 경우 학생에게 유리하게 심사
- 나이스에서 지원 대상자 결정 후 학생 개인별 교육비 지원 금액을 등록하여 수혜이력 관리
 - ※ 무상교육(고교학비), 무상급식,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지자체 지원 등 본 지침에 따른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학생'이 아닌 경우는 교육비 수혜이력 관리 대상에서 제외
 - ※ 교육급여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이력을 중복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 나이스로 심사 작업 진행 후, 학교장(또는 결재권자) 결재를 받아 심사 결과 확정
 -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 개최 불필요

- 나이스로 심사 결과 통보
 - 각 교육비별로 심사결과를 신청인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통보
 - 단, 학비 면제, 교육급여 등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는 심사결과를 미통보(학교운영지원비만 심사결과 통보)
 -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의신청 절차 명확히 안내
 - 오기재, 번호 변경 등, 신청인 휴대전화번호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심사 결과 통보 전까지 나이스에 정확한 휴대전화번호 입력
 - 통지 문안 ※ 학교에서 문안 수정 가능

〈 소득·재산 기준 교육비 심사 〉

- 고교 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 홍길동 학생은 20xx년 교육비 신청 항목 중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등학교 - 연락처 xxx-xxxx-xxxx
- 고교 학비 지원 대상자 탈락 시
 - 홍길동 학생은 20xx년 교육비 신청 항목 중 고교 학비 지원 대상에서 선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학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교 - 연락처 xxx-xxxx-xxxx

〈 학교장 추천 심사 〉

-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시
 - 홍길동 학생은 20xx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 학교장추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고등학교 - 연락처 xxx-xxxx-xxxx

- 신청서에 교육정보화 관련 사항 오류가 있는 경우, 학교에서 해당 내용 (사용 통신사, 인터넷 가입자 성명 등) 확인 후 수정
- 심사 기한 : 행복e음 조사결과가 나이스로 전송된 이후 30일 이내
- 나이스의 학생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에 오류가 있는 경우, 행복e음 조사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나이스 학생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기재될 수 있도록 관리(학교는 3월 중 나이스 학적정비 완료)

- 행복e음 조사결과가 나이스로 전송된 이후 나이스 학생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나이스의 학생 주민등록번호 수정 이후 심사 작업 진행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라 학생 주민등록번호 수정

4. 학교장 추천

- 교육비 심사에서 탈락^{*}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교사(업무담당자)가 추천
-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선정된 자에 대한 정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자체 등에서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학부모에 안내
 -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 선정·지원(나이스 처리 병행)
 -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의 수시 구제를 위하여 학교장 추천을 상·하반기로 분리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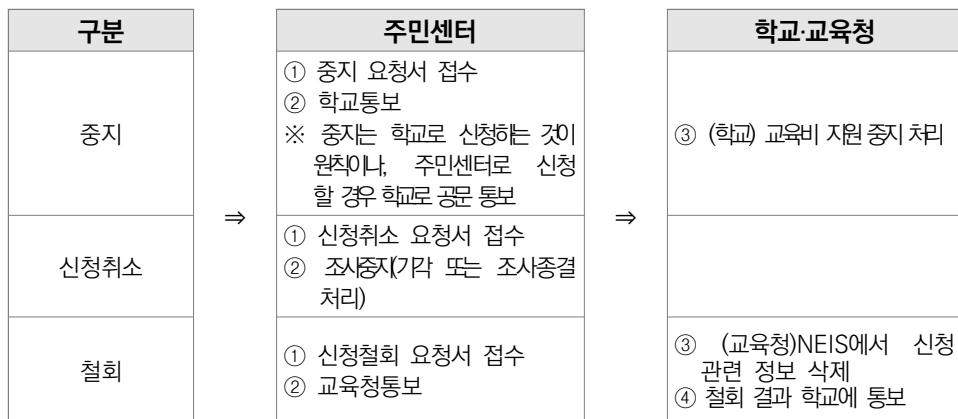
제4편

5. 교육비 지원의 실시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고,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년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
 - 단, 교육정보화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정함
 - ※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 지원
 - * 단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신청 당시 교육비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학교에 전송된 시점에 변경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준이 변경된 시점부터 지원
(예시 : 2월에 교육비 지원 신청(지원기준 중위소득 52%) → 3월에 교육비 지원 기준 변동(지원기준 중위소득 60%) → 4월에 소득재산조사 결과 중위소득 54%인 경우, 3월부터 교육비 지원 시작)
- 타 시·도 소재 학교로 전출입 시, 해당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기준에 따름

6. 교육비 지원의 중지(신청 취소·철회)

- 신청인이 교육비 신청을 취소(철회)하거나 교육비 지원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아래절차에 따라 처리
 ※ 향후 교육비 지원 희망 시, 다시 교육비 신청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
- 신규신청자와 신청간주자(확인조사 대상자)가 '22년 교육비 지원을 신청 취소(철회)를 원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취소(철회)를 요청
 - 신규신청자의 신청 결과가 나이스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시군구·주민센터는 행복e음에서 신청 기각 또는 조사 종결 처리
 - 신규신청자의 신청결과가 나이스로 전송되었거나, 신청간주자인 경우, 시군구·주민센터는 신청 취소(철회) 요청서를 접수하고 학교 및 교육청에 통보



-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또는 지원 예정자가 학교에 지원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학교는 중지 요청서(별도 서식 1호) 징구 후, 교육비 지원 중지 처리(나이스 처리 병행)
 ※ 유선으로 요청하는 경우, 상담내용 기록으로 요청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문 처리 시 반드시 비공개 설정
- 학생이 자퇴·퇴학한 경우, 보장을 중지하고 나이스-행복e음 연계를 통해 중지 이력 통보
 - 휴학한 경우는 보장대상자 자격 유지 (교육비 지급만 중단)
 - 자퇴·퇴학한 학생이 재입학을 하는 경우, 교육비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 단, 학생이 사망한 경우는 행복e음에서 나이스로 보장 중지 자동 통보

7. 학교 변동사항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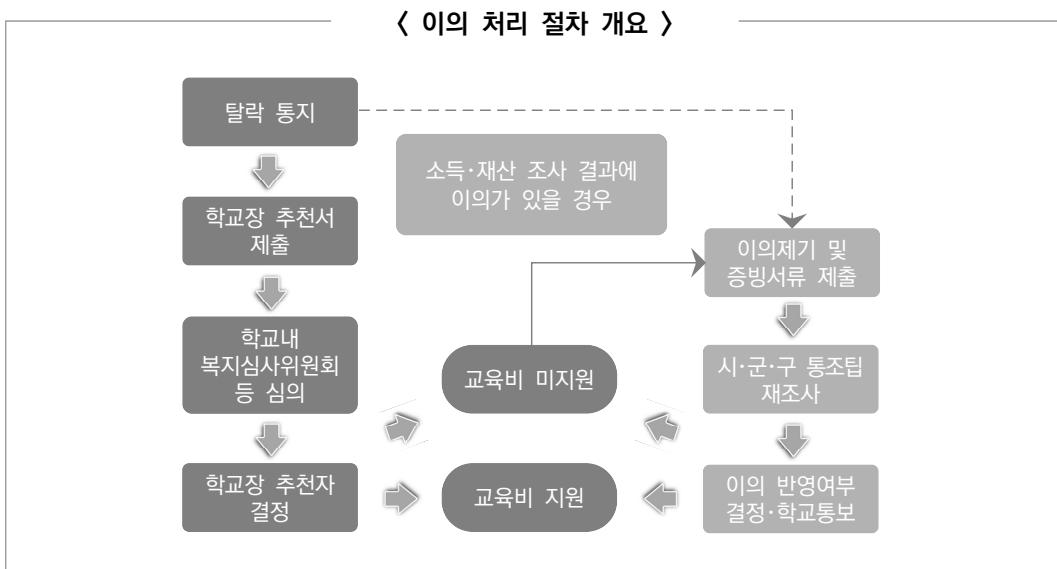
- 학교 업무 담당자는 학적 변동 등 각종 사항을 매달 갱신하여야 함
 - 수시로 나이스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함
- ※ 시·도간 전출, 학적 비교 등

II

이의신청

1. 개요

- 교육비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가능
 - 단, 교육비 신청서 기재 사항, 소득·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



2. 이의신청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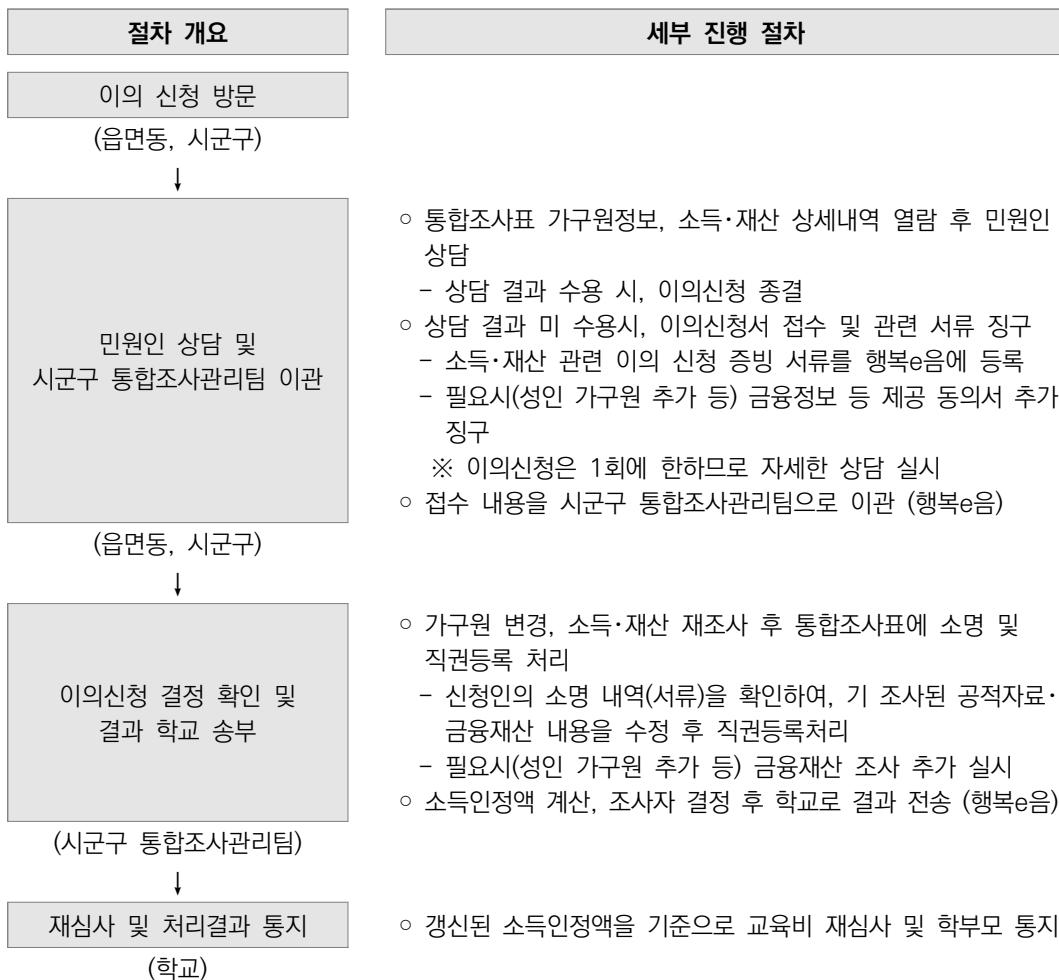
- 신청인 : 교육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집중 이의신청 기간은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구두 또는 서면
- 처리기관 : 학교 (또는 시·군·구청장)
- 신청대상 처분 : 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한 처분
- 처리기한 :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3. 이의신청 절차

가. 이의신청 절차 개요

- 이의 신청자 학교 방문 (또는 담당자와 통화)
- 학교는 학교장 추천지원 의향을 확인한 후, 희망 시 학교장 추천 신청
 -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경우 이의 처리 종료
- 학교장 추천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 관련 이의 신청 절차 안내
 - 소득·재산은 신청서 기재내용과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므로, 신청서 기재내용 또는 공적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조사 결과가 변경될 수 있음
 - 이의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한 읍면동 사무소 방문 안내
 -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 민원이 없도록 자세한 상담 실시
 -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청일 이전의 소득재산 변동사항만 인정
- 읍면동은 이의 신청 관련 상담을 수행하고, 이의 신청 접수 후 시군구 이관
- 시군구는 가구원, 소득·재산 재조사 후 재조사 결과를 나이스로 전송
- 학교에서는 재심사 후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
- 신청일 이후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변동 등은 이의신청이 아닌, 교육비 지원 재신청이 필요함을 안내(단, 성인 가구원의 추가·제외는 이의신청으로 가능)

나. 지자체 이의신청 세부 절차



다. 주요 이의신청 사례

- 주택을 매매하여 현재 미보유중이나 보유중으로 조회되는 경우
 - 증빙서류(매매계약서) 징구 후, 주택 재산항목 감소 처리(기타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음)
- 일용근로소득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 자료 확인지침(Ⅱ. 소득조사 참조)에 따라 처리

- 금융조사결과 외의 부채 인정을 주장하는 경우
 - 부채 반영 지침(IV. 소득인정액 산정 참조)에 따라 처리
- 소득·재산 신고서 금액과 공적자료가 이중으로 반영된 경우
 - 사실관계 확인 후, 해당 부분 삭제
- 성인 가족을 가구원으로 추가하거나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관계 확인 후, 반영
 - 다만 가구원 추가 시, 해당 가구원에 대해 공적자료, 금융재산 조회 실시

4. 이의신청 처분의 효력

-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 소급하여 지원 결정
 - 단, 교육정보화 지원은 다른 교육정보화 지원자가 지원되는 시점부터 소급 지원하되, 신청일이 속하는 달이 다른 교육정보화 지원자에 지원되는 시점보다 늦은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 소급하여 지원
-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불복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5. 이의신청 서식

-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준용)
-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확인자료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확인자료(대리 신청의 경우)

III

변동 및 사후관리

1. 개요

-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수급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수급자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조사 실시
- 수급자의 가구원,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행복e음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관련 서류 등은 보관 관리

2. 변동사항 확인대상

- 수급자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 거주지, 가구구성
 - 수급자 취업상태
 - 수급자 소득·재산

3. 변동사항 확인방법

- 일반적인 확인 방법
 - 수급자의 신고
 -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 행복e음을 통한 확인
 -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 (교정시설 입소, 군입대 등), 소득·재산 변동 등

※ 각 항목별 알림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행복e음으로 통보

〈참고〉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시기

구분	변동 주기
인적사항	사망/말소 매일 변동사항 발생
	군입대 / 군제대 매월 변동사항 발생
	교정시설 입·퇴소 매월(2회) 변동사항 발생
전출입	가구전체 매일 변동사항 발생
	가구일부 매일 변동사항 발생

4.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 소득·재산, 가구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복e음으로 통보(알림기능)
 - 거주지 또는 가구원 변동의 경우 행복e음에서 처리하나 자격은 변동 처리하지 않음
※ 확인조사 시 별도 가구원변동을 처리하지 않기 위하여 전출입등으로 인지된 시점에 인적변동
변동 반영 처리
-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복e음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
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보장기관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그 달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변동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은 중앙 전담기관에서 모니터링 실시

IV

보장비용의 징수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비용의 징수)]

-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일 : 2017.3.21.]

가. 부정수급의 확인

(1) 부정수급의 정의

-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를 말함
 - 이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교육비를 지원받게 한 자를 부정수급자로 지칭
 - 따라서,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타 관계인(예를 들어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 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도 부정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음
- ※ 부정수급 예시 :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소득·재산이 있는 가구원을 누락시킨 경우,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재산을 누락시킨 경우 등

(2) 부정수급의 확인기관

- 시군구청은 교육비 지원자의 부정수급임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 내용, 대상자, 실제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교육청(학교)으로 통보
- * 교육비는 지원이 결정되면 이후 소득재산변동에 상관없이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므로, 교육비 신청 및 조사 시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부정수급 여부 판단

- 교육청(학교)은 지원자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에 부정수급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고, 시군구청은 재조사를 거쳐 확인된 부정수급 내용,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교육청(학교)에 통보
 - * 다른 시군구청에서 교육비 소득·재산 조사를 처리한 경우, 해당 시군구청으로 이송 후 교육청에 안내

나. 보장비용 징수결정

(1)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

(가) 징수기간 산정기준

- 교육청(학교)은 시군구청에서 통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교육비 항목의 지원 기준에 따라 재심사하여 해당 학생의 교육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 선정 기준 초과로 교육비를 전부 또는 일부 증지한 경우, 해당 항목을 신청 시부터 기산하여 보장 비용 징수

(2) 징수대상자 관리

- 교육청(학교)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제4편

다. 보장비용 징수 절차

(1) 보장비용 납부통지

- 보장기관이 보장비용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문서로 납부 통지하여야 함
 -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통지서 및 고지서를(등기우편 등) 송부. 단, 징수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로 가능
- 징수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 및 전출 시에는 보장비용 납부 통지서 및 고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토록 함
 - 단, 징수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가능

(2) 분할납부

- 보장기관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음
 - 분할 신청이 있는 경우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감안 분할 징수

(3) 독촉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라. 징수금액의 처리

- 징수한 보장비용은 시도교육청의 그 외 수입으로 처리

2. 결손처분

(1) 보장기관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 (가) 체납처분은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부족한 때
- (나) 보장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서 국가의 권리로서 소멸시효는 5년

- (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등 체납처분 중지사유가 발생한 때
- (라) 지방행정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확인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 단,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함

3. 소멸시효

- 보장비용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
 - 관련법 : 지방재정법 제82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 민사상의 부당 이득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 10년

4. 고발조치

[초·중등교육법 제67조(벌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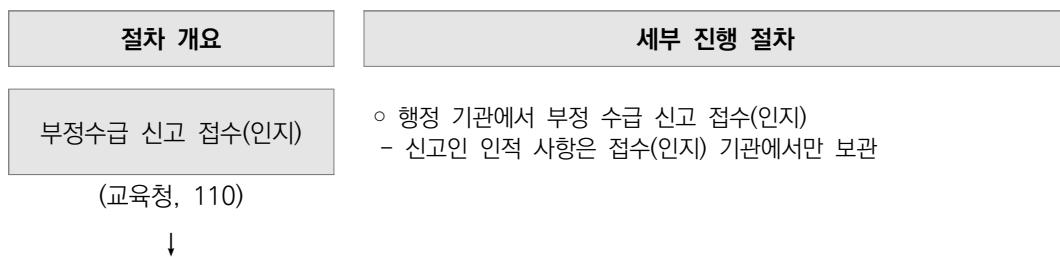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신설 2016.12.20.>
[시행일 : 2017.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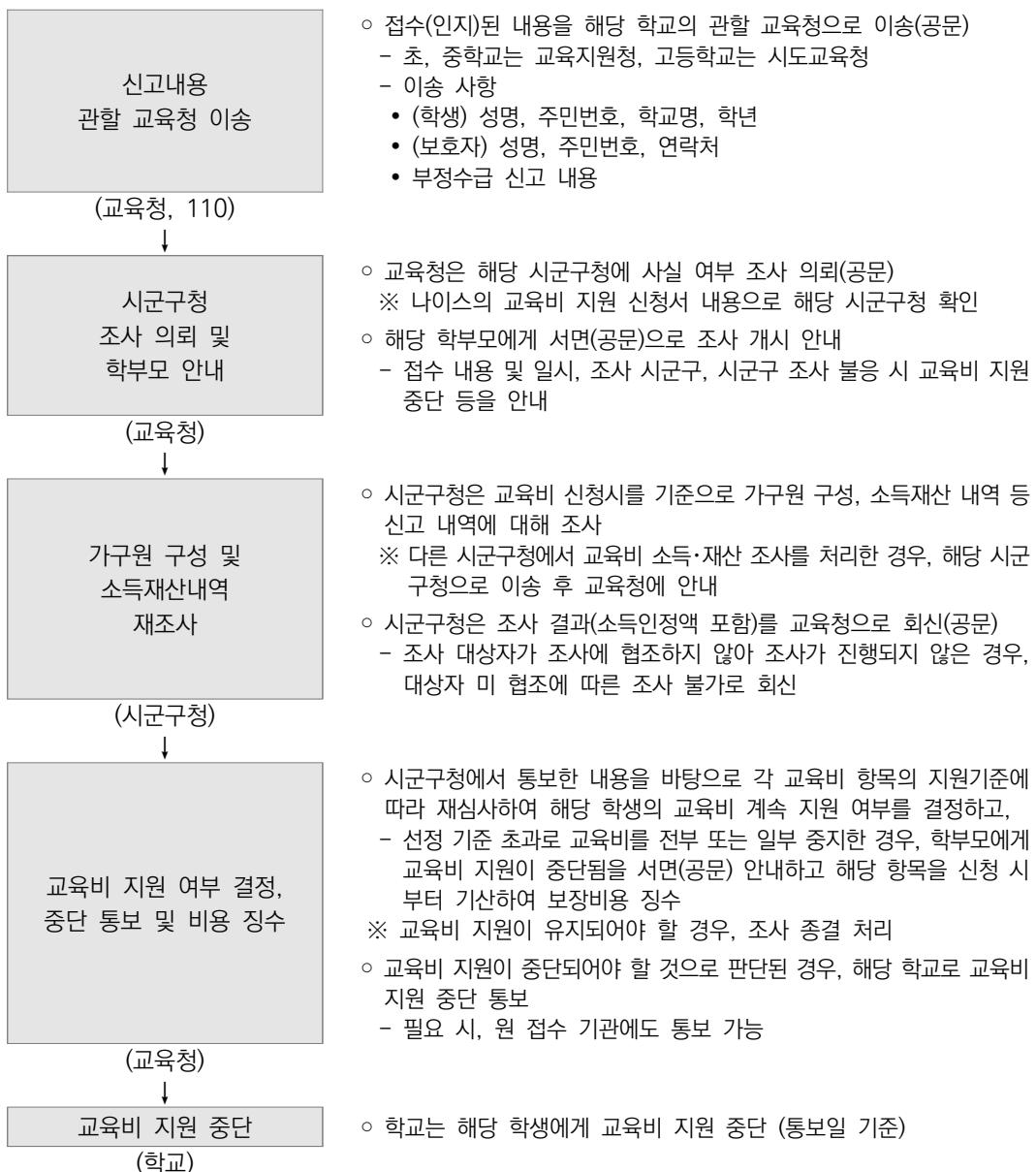
- 부정수급기간이 1년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법 제67조에 따라 고발조치
 - 단,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5. 부정수급 신고 처리 절차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7 및 제60조의10에 따라, 교육비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대상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부정 수급을 차단

〈 처리 절차 〉





- ※ 자체에서 부정수급을 인지한 경우, 해당 내용을 교육청으로 이송하고, 교육청 조사 요청에 협조
- ※ 부정 수급 신고자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보장 철저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문 처리 시 반드시 비공개 설정
- ※ 시군구청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7 제4항 및 제60조의10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중단 및 비용 징수
- ※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조사 대상자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에 조사 사실 통보 금지 (학교 신고, 인지 시는 예외)

V

개인정보 보호

1. 개요

- 교육비 지원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점검 필요
- 업무관련자가 취득한 개인정보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 수행

2. 주요 노출 사례

제4편

< '주요 노출 사례' >

- A초 수학여행비 지원을 받은 학생 명단을 가정통신문에 기재하여 언론에 보도
- B초 시교장, 교육비 지원 학생만 대상으로 훈화 (주위 학생들에게 노출)
- C고 급식비 신청서로 인한 정보 노출
 - 급식비 신청서를 일반학생에게만 받고,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에게는 신청서를 받지 않음
- D중·고 교육비 납입 고지서 및 납입 영수증으로 인한 정보 노출
 - 교육비 납입 고지서를 일반학생에게만 나눠주고 교육비 지원 학생에게는 나눠주지 않음
 -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일반학생에게만 나눠주고 교육비 지원 학생에게는 나눠주지 않음
 - 납입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된 고지서를 배부하여, 학생끼리 고지서를 비교하여 정보 노출
- E고 방과후 교육비 지원 대상 개인 상담이 외부 학생에 노출
- F고 교육비 지원 내역이 다른 학부모에게 노출
 - 학교 내 각종 회의에,(학생복지심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른 학부모가 참여하여 지원 대상 학생의 정보 노출
- G고 기초 수급자 관련 공문을 비 관계자에게 열람하여 정보 노출

3. 조치 사항

- 교직원 연수 강화 및 개인정보 노출 소지 자체 점검·보완
- 각종 교육비 고지서 발급은 가정통신문 안내로 대체
※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나이스 홈에듀민원서비스(www.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 법정 자격 대상자(기초, 학부모, 차상위)의 경우 심사 완료 시 까지 교육비 납부
독촉 금지 및 CMS 계좌 인출 유예함으로써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노출 차단
※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명단 확인 가능
- 학부모가 자녀 모르게 신청한 사례, 교직원이 학생 가정의 경제사정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거부감 등을 고려하여 학생 지도에 주의하고, 해당 학생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업무관련자 비밀 염수 및 자료 관리 철저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의거 최고 파면에 처해질 수 있음
 - 학부모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과의 관계
확인 후 안내 가능
※ 학생에게는 정보 제공 금지
 - 교육비 지원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교직원(담임교사 포함)의 단순 열람은 원칙적
으로 금지
※ 단, 학교장 추천 지원, 장학금 추천, 학생 생활지도 등 필요한 경우 학교장 승인 후 해당 목적을
위해서만 열람 가능



붙 임

참고 자료



붙임 1**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

※ 상세기준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무상교육	무상급식				○	○
	2						○	○
	3						○	○
	4						○	○
	5						○	○
	6						○	○
중	1						○	○
	2						○	○
	3						○	○
고	1						○	○
	2						○	○
	3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4	중위소득 기준 이하		60% 이하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5	학교장 추천			○			
6	난민인정자		○	○	○		○

□ 부산광역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무상교육	무상급식		○			○
	2				○			○
	3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2				○			○
	3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교육	무상급식	교육	의료	교육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4	증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60% 이하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6	난민인정자	○			○		
7	국가유공자 탈북·다문화가정학생				○		

□ 대구광역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무상교육	무상급식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2				○	○	○	
	3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교육	무상급식	교육	교육	교육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4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60% 이하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
6	난민 인정자	○			○		

□ 인천광역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무상교육	무상급식		○			○
	2				○			○
	3				○			○
	4				○			○
	5				○			○
	6				○			○
중	1				○	○	○	
	2				○	○		
	3				○	○		
고	1				○	○		
	2				○	○		
	3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4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60% 이하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5	학교장 추천			○			
6	난민 인정자	○	○	○		○	

□ 광주광역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무상교육	무상급식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2				○		○	
	3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무상교육	무상급식	교육	의료	교육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4	중위소득 기준 이하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				
6	난민인정자				○				

□ 대전광역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무상교육	무상급식		○			○
	2				○			○
	3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2				○			○
	3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무상교육	무상급식	교육	의료	교육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4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				
6	난민 인정자				○	○	○		

□ 울산광역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무상교육	무상급식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2				○		○	
	3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교육	교육	교육	의료	교육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4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60%이하	135%이하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6	난민 인정자	○		○			
7	다자녀 가정		○	○			
8	보훈대상자	○		○			
9	다문화가정		○				
10	특수교육대상자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무상교육	무상급식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2				○		○	
	3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무상교육	무상급식	교육	교육	교육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4	증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				
6	난민 인정자				○				

□ 경기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무상교육	무상급식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2				○		○	
	3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무상교육	무상급식	교육	의료	교육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4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70% 이하			
5	학교장 추천				○		
6	난민 인정자				○	○	○
7	탈북학생				○		
8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		

□ 강원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무상교육	무상급식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2				○		○	
	3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교육	무상급식	교육	의료	교육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4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6	난민 인정자	○			○		○	

□ 충청북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무상교육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중	1				○	○	○	○
	2				○	○	○	○
	3				○	○	○	○
고	1				○	○		○
	2				○	○		○
	3				○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무상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4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52% 이하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6	난민 인정자				○		

□ 충청남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무상교육	무상급식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2				○		○	
	3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무상교육	무상급식	교육	의료	교육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4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				
6	난민 인정자				○		○		
7	다자녀가정 자녀				○				
8	보훈대상자 자녀				○				

□ 전라북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무상교육	무상급식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2				○		○	
	3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교육	무상급식	교육	교육	교육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4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68% 이하	80% 이하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6	난민 인정자	○			○		○
7	다자녀	○(셋째부터)			○(셋째부터)		

□ 전라남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무상교육	무상급식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2				○	○	○	
	3				○	○	○	

* 고교 학비

- 단, 고교 무상교육 제외교(자율형사립고) 기준증위소득 60%이하 대상자만 교육비 사업에서 지원

** 급식비

-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단, 목포, 여수, 순천시 등단위 소재 고등학교 식품비만 교육비 사업에서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도시지역 등단위 소재 초·중·고등학교만 해당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무상교육	무상급식	교육	교육	교육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4	증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70% 이하 (단. 3자녀 이상 다자녀 100%)				
5	학교장 추천				○				
6	난민 인정자				○	○	○		

□ 경상북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무상교육	무상급식		○		○	
	2				○		○	
	3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2				○		○	
	3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무상교육	무상급식	○	생계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4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80% 이하		60%이하
5	학교장 추천				○		
6	난민 인정자				○		

□ 경상남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무상교육	무상급식		○		○	
	2				○		○	
	3				○		○	
	4				○		○	
	5				○		○	
	6				○		○	
중	1				○		○	
	2				○		○	
	3				○		○	
고	1				○		○	
	2				○		○	
	3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무상교육	무상급식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4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				
6	난민 인정자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무상교육	무상급식		○		○	
	2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2				○		○	
	3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무상교육	무상급식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4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70% 이하			
5	학교장 추천				○		
6	난민 인정자				○		
7	탈북학생				○		
8	다자녀				○		

불임 2

교육비 신청 관련 서식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 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 ¹⁾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 족 사 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 ²⁾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 ³⁾ : _____, _____ 3. 국외출생자명 ⁴⁾ : 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 ⁵⁾ : _____, _____									
부 양 의 무 자 ⁶⁾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 여 계 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⁷⁾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작성방법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기구에 한함)

2),3) 해당자에 한함

4),5)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7) 동일보장기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4쪽 중 2쪽)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 ⁸⁾ [] 기타 ⁹⁾) [] 교육급여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놓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영유아			
아동수당	[] 지금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학자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인터넷 기업(예정)자 성명: , 주민번호:]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노인	[]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애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금(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차상위 자산형성 [] 타법 의료급여 ¹⁰⁾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전기요금 [] TV수신료 면제 [] 휴대전화요금 [] 지역난방요금 [] 도시가스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4쪽 중 3쪽)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선택적 동의

동의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6.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유의사항

확인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균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자급·정지·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7.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내해 드리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기구 단위로 신청되며, 기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기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¹¹⁾ 성명 :
(배우자 동사신청 시)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 8)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 9) 가정위탁(임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동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안내사항

처리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일 : 유아학비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계법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¹²⁾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금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지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인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경정고시·학원등록증방지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업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차상위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기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기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 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기록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 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 ¹⁾							
소득 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월	원	원	원	
		일용근로	월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자비적물경)	(월)	(월)	(월)	(월)	
		임업소득	월	원	원	원	
		어업소득	월	원	원	원	
	재산 소득	기타(자영업)	월	원	원	원	
		임대소득	월	원	원	원	
		이자소득	월	원	원	원	
	기타 소득	연금소득	월	원	원	원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월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²⁾	월	원	기 타 (자자체 지원금등)	원	원		
재산 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명()	<input type="checkbox"/>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input type="checkbox"/> 전·월세보증금(원)	<input type="checkbox"/> 상가보증금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원	
	금융재산	<input type="checkbox"/> 소 (마리, 원) <input type="checkbox"/> 뇌지 (마리,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가축 (마리, 원) <input type="checkbox"/> 종묘 (원) <input type="checkbox"/> 기계·기구류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원	분양권 조합원 입주 권 회원권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 ³⁾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기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 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input type="checkbox"/>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 ⁴⁾	<input type="checkbox"/>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원)					원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원)					원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원)					원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원)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신청인(다리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년)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기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앞 쪽)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 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①,②}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③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	[]	[]
	[]	[]	[]	[]
	[]	[]	[]	[]
	[]	[]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들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 지원법」, 「장애인등 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맞춤형 급여 안내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위한 수급가능성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뒤 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 2) 정기예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 자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사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 주기적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재산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기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사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의자(자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및 제4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인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별처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4호]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자격 구분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input type="checkbox"/>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input type="checkbox"/> 전기요금	<input type="checkbox"/> TV수신료 면제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요금			
		<input type="checkbox"/> 지역난방요금	<input type="checkbox"/> 도시가스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_____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_____ ◦ 이동통신사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_____ 사업자명 : _____ 고객번호 : _____)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LG 유플러스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LG 유플러스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LG 유플러스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LG 유플러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요금 감면 및 복지지원 연계를 (대행)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_____ (대리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본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사업자,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및 복지지원 연계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 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2. 복지대상자 요금감면을 받을 경우, 자격변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요금감면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본 감면 신청과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서식 7호] 사회보장급여관련[결정(적합)/결정(대상제외)/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1 면]

**사회보장급여 [] 결정(적합) [] 결정(대상제외)
[]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신청인/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비고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생계·의료·주거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군·구청장이, 교육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도교육감이 각각 통지
-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및 임대차 계약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 변경 되거나 급여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중지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신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증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기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지금받은 인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임차 연체 등
 - 변경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임대차 계약조건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급여감소 :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경우 등
-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하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입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입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자는 적합통지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부터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 한부모가족 ([] 급여자금, [] 증명서 발급) [] 장애인복지 [] 기타
() 급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가족 또는 장애인복지(장애인수당)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증명서(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를 초과하고 60%이하인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자(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고 72%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자)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영유아보육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가정양육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출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3.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이 부모의 취업 여부 등 연장보육반 자격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입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 가정양육수당 수급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의 경우 유효기간 내일자라도 해당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직권으로 **기본보육반**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금 예정 장애인연금 급여액 및 자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성 명	장애인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장애정도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연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 : 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자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기관명		대표자
지원기관	주소		담당자
			연락처
	지원내용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금예정 연금액 및 연금지급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성 명	기초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원		
배우자		원		

* 이 금액은 예상연금액으로 실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시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권상실, 변경되거나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 : 기초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기초연금 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자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시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가족불명자로 등록된 경위실제 가족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보장기판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금융기관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법 제11조, 제28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아동수당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금 예정 아동수당 급여액 및 지급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3.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 출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4. 아동수당 수급 이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제1호 의해 해당 기간동안 아동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아동수당법 제15조(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중지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 변경 : 보호자의 변경, 지급계좌 변경, 기타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행방불명 신고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실종신고가 진행 중인 자, 해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6.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하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아동수당법 제26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8. 아동수당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흥·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금융기관에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입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정을 하면 급여가 입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 (소년소녀기정보호비 / 그룹홈·기정위탁보호비 / 기타)**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하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사회서비스 조사·심의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통〉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명	정부지원액 (월)	본인부담금 (월)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본인부담금납부계좌		이용권 유효기간		지원내역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인 경우

활동지원등급	등급	종합점수	점
결정 급여	[] 활동지원급여 [] 특별지원급여 []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월	월	월 원
		활동지원급여	월 원
		특별지원급여	월 원
		긴급활동지원	월 원
본인부담금	월	월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급여개시일			
유 효 기 간	.	.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안내문 참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수급자인 경우

이용 서비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서비스이용시간	[] 시간
급여개시일	.
유 효 기 간	.

2.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안내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희망e든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기존 카드로 금번에 대상자로 결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다만, 카드사를 통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 4번)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부담금 납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정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기타 사회서비스 : 제공기관 지정 계좌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서만 산정되고, 특별지원 급여에서는 면제됩니다. 또한, 긴급활동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4%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됩니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 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4. 서비스 개시 및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가 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여성청소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생리대)을 국민행복카드(**신청서 상의 신청인, 청소년 본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바우처 포인트 전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원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이용자 준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 이용도중 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서비스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종지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신고내용, 행정기관 확인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종단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차상위계층 등 보유자격의 상실, 영아의 사망, 연락처 변경 등 인적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 내용에 따라 지원금액 또는 부가서비스 수혜 여부 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청소년의 사망, 수급자 자격 변동 등 지원자격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읍면동주민센터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을,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매 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함께 구매할 경우 각각 나누어 별도 결제하여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는 연속하여 6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연속하여 3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자격이 종지될 수 있습니다.(단,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제외)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의 결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생활비용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기재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출 항 목	금 액(원)
합 계	
학 자 금	
전 기 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기 타	

3. 제출된 지출서류를 심사한 후 60만원을 한도로 귀하께서 신청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서비스유형	지원유형	보장기간/지원시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초과, 여성가족부 및 시도·시군구가 규정한 '서비스 이용 준수사항'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타법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유형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께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의료급여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우선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진료 후 필요한 경우에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은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4.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다음 각 질환별 연간 365일이며, 불기피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0개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및 10개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질환을 모두 합하여 연간 365일
 5. 의료급여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빌려준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중지 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의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차상위 계층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생년월일

2. 귀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자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자격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금 예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급여액 및 지금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개시일

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자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 아동은 수급권 상실·정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상실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난민인정 취소 등

- 정지 :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등

※ 국외체류 90일 이상 지급 정지 예외 사유 : 인턴, 해외유학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단, 공적자료로 증빙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변경 :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등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하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됩니다.

6.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입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대상 제외

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 · 서비스내용
대상 제외 사유	<input type="checkbox"/>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안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영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경우 여성청소년이 만11세 이상 만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정지·중지·상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 변경	사유	[] 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자변경		
		[] 소득·재산·임대차계약·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조제분유 추가지원		
		[] 기타()		
[] 정지	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기타()		
[] 중지	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보장시설입소·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 상실	사유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2개월 연속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월이상 월차임을 연체		
		[] 기타()		
		[] 사망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수급연령 초과(생후 71개월이 되는날)		

[3 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5) **아동수당**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6)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 7) **차상위계층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 8)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4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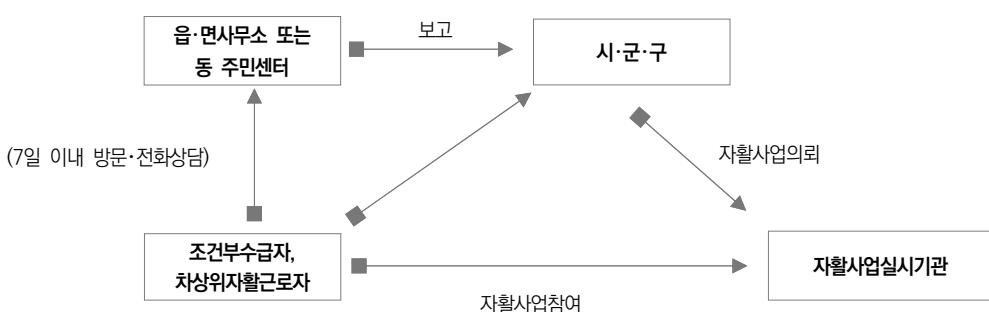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결정

조 건 부 수 급 자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구 분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유예자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유예자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유예자
	특이 사항	[] 가구원 일부보장()	[] 조건부수급자()	[] 기타()	
보장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가구원은 근로능력가구여간취업상태 등이 기준에 해당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조건부수급자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중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선정된 수급자임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원은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셔야 합니다.(전화상담도 가능) ○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불가피한 사유(건강문제 등)가 있는 경우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생계비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제2항)
- ※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한 경우 생계비가 다시 지급됩니다.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5 면]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신청인/ 세대주	성명			
	주소			
	보장가구원수	명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결정사항
생계급여	월	<input type="radio"/>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¹⁾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²⁾ (다)	원	
의료급여	월	<input type="radio"/>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원	
주거급여	월	<input type="radio"/>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원	
교육급여	월	<input type="radio"/>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원	

- 1)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은 세부 항목에 따라 급여별로 차이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 자동차는 기본재산액, 부채 공제 적용하지 않으며, 주거용재산 한도액 및 기본재산액을 급여별·지역별 차이 있음

【참고】○○○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내역

〈소득 금액〉

(단위: 원)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이전소득 등	부양비*
			생계급여:
			의료급여:

* (부양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결과(미약구간)에 따라 수급(권)자 가구에 부과되는 소득

〈재산 가액〉

(단위: 원)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서식 8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차)

수급자 (보호대상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거주지(소재지)			
비용(부당이득) 납부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수급자·보호 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	[] 부양의무자	[] 기타()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용				
환수(반환) 사유				
환수결정액	원		납부장소	
기 납부액	원			
납부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신출내역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및 제47조, 「아동복지법」 제61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및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2, 「의료급여법」 제23조, 「주거급여법」 제20조, 「아동수당법」 제16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에 따라 이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직인

안내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음
 -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서식 9호]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_____)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_____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_____)		
처 분 내 용	[] 선정 [] 보장변경/증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8조, 「긴급복지 지원법」제16조, 「기초연금법」제22조, 「장애인복지법」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6조, 「의료급여법」제30조제1항, 「장애인 연금법」제18조, 「장애인활동 복지지원법」제38조, 「아동수당법」제1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안내사항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기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⑦ 별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이내, 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서식11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이의 신청일			
처분 내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결정 결과	<input type="checkbox"/> 처분 취소·변경	<input type="checkbox"/> 기각	<input type="checkbox"/> 각하
이의신청 결정 사유	〈별지 작성 가능〉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에 따라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달 달 자 : (소술) (설명)

무의전학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도지사

직인

참고
사항

- **기각** :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 **각하** :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별도 서식 1호)

교육급여 () / 교육비 () 중지 요청서

신청인	성명	학생과의 관계	
	주소		

대상 학생	성명	생년월일	학년	반
----------	----	------	----	---

확인사항

<지원항목>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
- 교육비 : 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교육정보화비, 기타 교육비()

1. 해당 중지 요청은 학생 본인, 부모와 형제 등 가구원이 가능합니다.
2. 교육급여와 교육비 일부 항목 중지를 요청한 학생이 다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로 신청하시면 다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항목 중지를 요청한 학생이 다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본인)은 상기 확인사항을 숙지하였으며, 대상학생(본인의 ____)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지 않으므로 지원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00 학교장 귀하 / 00읍면동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도 서식 2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처/담당자	접수일
요청인 ※ 학생의 보호자만 가능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학생과의 관계
대상 학생 ※ 신청취소(철회) 요청 학생을 모두 기재	1	성명 주민번호 현재 다니는 학교 학년
	2	성명 주민번호 현재 다니는 학교 학년
	3	성명 주민번호 현재 다니는 학교 학년
확인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는 학생의 부모(보호자)만 가능합니다.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신청취소(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을 모두 기재합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 학생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학교로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청취소(철회) 요청 학생에게는 4대 교육비(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교육정보화비) 모두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 학생이 다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p>신청인(본인)은 상기 확인사항을 숙지하였으며, 대상학생(본인의 _____)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지 않으므로 _____ 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을 취소(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년 월 일		
(성명)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도 서식 3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연락두절 가구원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처/담당자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학생과의 관계
학생	성명	주민번호	
	현재 다니는 학교		학년
	성명	주민번호	
현재 다니는 학교		학년	
연락두절 가구원	성명	주민번호	
	※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 주소 불명시 생략		학생과의 관계
제외 요청 사유 상기인은 신청인 및 학생과 ____년 ____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____년 ____월 이후 학생의 양육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			
신청인(본인)은 상기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한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비 지원이 중단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비용의 환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도 서식 4호)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대상 학생	1	성명	학교명	학년
	2	성명	학교명	학년
	3	성명	학교명	학년

확인사항

1. 지원대상 학생의 형제·자매 등이 교육청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PC 및 인터넷 통신비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 폭력성 오락, 음란물, 채팅 등 비교육적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3. 교육청 또는 학교 담당자가 해당 가정의 컴퓨터 또는 인터넷 사용 실태를 확인하거나, 유해 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컴퓨터와 인터넷의 교육적 사용을 위해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주소 이전, 전화번호 변경, 인터넷 가입자명, 아이디, 통신사 변경 등 인터넷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담당자와 사전협의하거나 즉시 통보하겠으며, 미 통보 시 통신비 지급 누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시·도 별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 동안 통신사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컴퓨터를 지원 받은 경우 담당 기관의 허락 없이 양도 또는 매각하지 않겠습니다(컴퓨터를 지원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
 ※ 위의 동의하신 내용은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으시는 동안 계속 유효하므로 별도의 안내가 없는 한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인)
 (학생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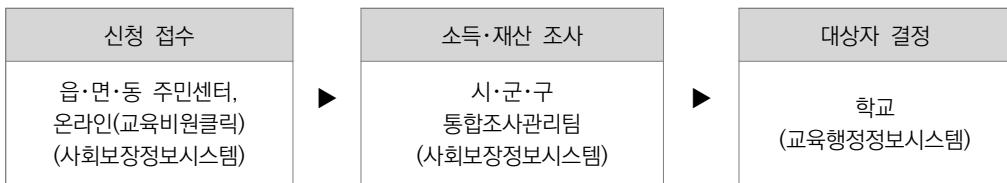
시·도교육감 귀하

불임 3

교육급여 사업과의 관계

□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의 관계

- 공통점
 - (사업 목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용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 도모
 - (지원 절차) 학부모 등 보호자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학교에서 지원 결정



- 차이점 : 법적 성격, 지원 기준, 지원 항목 등 차이 존재

구분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초·중등교육법
법적성격	권리성 급여	재량적 예산사업
지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청 자율(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신청시기		상시 신청
소득재산조사 방식	기초생활보장제도 동일	교육비 자체 방식
지원항목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 수업료를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2022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발행일 2022년 2월

발행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지침과 관련된 질의는 (국번없이) 1544-9654

“교육비 지원 콜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매품》

